

월간
재정포럼 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2월호 제176호

- 현안분석** • • 기업기부금의 자발성 실태조사/ 손원익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명호

- 정책토론포트** • • 재정통계 개편안

- 정책흐름** • •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넘어 · 송대희
현안분석	08	기업기부금의 자발성 실태조사 · 손원익
	23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박명호
정책토론포트	47	재정통계 개편안
공공정책포럼	58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
주요국의 조세동향	62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 외
정책흐름	72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76	2010년 국세징수 실적
	79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83	201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85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출범
	87	한-인도 CEPA 발효 후 1년의 성과
재정통계	92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외
이슈 & 포커스	104	“법인세 5%P 감세로 GDP 0.4~1.2% 증가” 외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넘어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것이 있다. 많은 중진국들이 빠져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함정이다. 지난 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대략 40여개 국가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여 년간의 세계 경제성장 데이터를 만들어 공개한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의 자료를 분석한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에 의하면 지난 세기에 40여개 국가들이 저소득국가 수준에서 탈출하여 중진국 수준의 경제성장까지는 이루었으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도 2010년 11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경제의 특집보고서(Rising Recovery, Rising Risks)를 통해 중진국 함정을 모면하는 것(Escaping the Middle Income Trap)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수십 년 동안 남미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For decades, many economies in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have been stuck in this middle-income trap)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남미·아시아국가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1970년대에 한국보다 훨씬 높은 국민소득을 자랑했다. 그러나 중진국 함정에 빠져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선진국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냉탕 온탕을 되풀이하며 힘든 고삿길을 넘어가고 있다. 1970년 브라질의 1인당 GDP는 440달러였다. 한국의 1인당 GDP 280달러보다 약 2배나 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9년 1인당 GDP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1만달러 수준이고 한국은 2만달러가 넘는다. 아시아에서도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이 많다. 1970년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80달러로 한국의 280달러보다 앞섰다. 그러나 40년 후 2009년 1인당 GDP에서는 말레이시아가 6,7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은 2만달러가 넘어 말레이시아

의 3배를 넘는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더욱 안타깝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00달러 내외였을 때 필리핀은 이미 257달러로서 그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의 부국이였다. 그런 필리핀의 2009년도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으로 밀돌아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브라질도 말레이시아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지금 말레이시아는 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경제논쟁이 한창이다. 왜 그토록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가?

중진국의 함정을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의 변은 이렇다. 즉, 저소득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투자만 확대시키면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의 고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인건비, 물류 비용, 토지비용 등 모든 비용구조가 상승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저성장 내지 침체 상태로 접어들다는 논리다. 일단 어느 정도 높은 중진국 소득수준에 도달하면 종래의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슬로 옮겨가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익숙해져 온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 지난 20세기에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의 문턱을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술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지난 20세기에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의 문턱을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경제체질 개혁으로 중진국 함정 벗어난 한국

2010년 8월 Time지의 마이클 슈만(Michael Shuman)과 2010년 10월 뉴욕 타임지의 앨런 위틀리(Alan Wheatley)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을 한국만은 성공적으로 빠져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변모시켜 다른 모든 중진국과는 달리 선진국권에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경제체질의 변신이 있었던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 번에 걸친 극적인 변신이 한국으로 하여금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198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 등장한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개혁이었다. 그 당시까지 전체 금융의 50%까지 차지했던 정책금융을 폐지하고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규제완화를 하는 등 정

.....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던
 일본경제가 벌써 지난
 20여년 간이나 활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식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부의 직접적 시장간섭을 지양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권력하에 있었던 은행을 민영화하고 당시 재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도입하여 자유경쟁원리를 강조하였다. 1979년 5월에 등장한 영국 마가렛 대처의 시장경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주도 시장경제체제의 본격적 도입은 1979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때에 뿌리 내린 민간주도 시장경제체제는 지금도 계속 보완·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신은 1990년 후반 IMF 경제위기 시에 한국이 수행한 전 방위적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에서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 당시 30대 재벌 중 15개가 사라졌다. 오로지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통하여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개방은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 삼성, 그리고 LG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그 무렵이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투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오늘날 한국의 R&D투자의 GDP비율은 3.5%다. R&D투자비율과 대학교육 졸업자 비율은 한국이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일본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개혁 지속 추진 필요

한국경제는 드디어 1인당 GDP 2만달러를 통과했다.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삼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07년에 이미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한 이후 지금까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1만달러를 돌파한 1995년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겨우 2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최근 한국경제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던 일본경제가 벌써 지난 20여년 간이나 활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식 함정에 빠져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식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제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의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이다. 일본은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 산업이 취약하다. 우리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국가로 나가는 일이다. 일본은 아시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개방적이지만 아직 세계국가로

서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서 글로벌 경제로 나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 한국은 과연 일본식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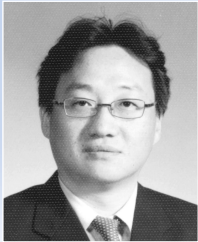


| 현안분석 |

- 기업기부금의 자발성 실태조사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기업기부금의 자발성 실태조사¹⁾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wson@kipf.re.kr)

본 실태조사는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과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 실태조사 목적 및 개요

기업의 준조세를 구성하는 여러 부담 중에는 비자발적인 성격의 기부금도 포함된다. 기부금은 본래 성격이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비자발적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인 성격의 기부금은 기업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실태조사는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과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0년 기부금 실태 조사는 2009년 기준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중 5,137개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1,823개 기업에서 설문 결과가 회수되어 35.4%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본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은 전화, 팩스, e-mail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02일부터 2010년 11월 08일까지 37일간 수행되었다.

기부금을 납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출액이 높을수록 기부금 지출확률이 더 높

1) 본고는 본인이 수행한 2010년 연구 과제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 방향』에서 수행되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매출 300억원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으로 구성하였다.

응답기업의 구성은 <표 1>과 같으며, 이 중 제조업이 911개사로 50.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뒤를 이어 도소매업이 283개사로 15.5%, 건설업은 273개사로 15.0%를 구성하고 있다. 법인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14.8%로 270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이 1,553개사로 85.2%를 차지한다. 상장·비상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총 1,823개의 응답기업 중 거래소 상장기업은 143개이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178개이며, 비상장기업은 1,502개를 차지하여 각각 7.8%, 9.8%, 82.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기부금 실태 조사는 2009년 기준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표 1> 2010년 업종 및 기업형태별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구 분	기업 수	비 중	
업종별	제조업	911	50.0
	건설업	273	15.0
	도소매업	283	15.5
	금융업	101	5.5
	운수업	69	3.8
	기 타	186	10.2
	합 계	1,823	100.0
법인규모별	대기업	270	14.8
	중소기업	1,553	85.2
	합 계	1,823	100.0
상장·비상장	거래소	143	7.8
	코스닥	178	9.8
	비상장	1,502	82.4
	합 계	1,823	100.0

II. 실태조사 결과

가. 기부금 수혜단체별 특성

2010년 설문조사에서 자발성에 대한 측정은 ‘완전 자발적’에서 ‘완전 강제적’까지 5단계로 하였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분류는 ‘다소 강제적’ 이상과 ‘중

기부금 수혜단체의 특성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접활동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임을 알 수 있다.

립적' 이상의 두 가지 경우로 분석하였다. 기부금 수혜단체의 특성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2>와 같이 직접활동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 기부금 수혜단체의 특성

(단위: 개, %)

		지출 동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순수모금단체	빈도	1,083	545	59	16	1	1,704
	비율	63.6	32.0	3.5	0.9	0.1	100
					1.0		
				4.5			
직접활동단체	빈도	97	134	38	31	2	302
	비율	32.1	44.4	12.6	10.3	0.7	100
					11.0		
				23.6			
기타기부단체	빈도	3	14	1	-	-	18
	비율	16.7	77.8	5.6	-	-	100
					0.0		
				5.6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나.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기부금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으며, 법정기부금이 다른 기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의 순서를 보이고 있어 법정기부금에 대한 상대적 비자발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에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포함하면,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법정기부금의 상대적 비자발성이 다소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2010년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응답 수	149	161	38	31	0	379
	비율	39.3	42.5	10.0	8.2	-	100.0
		39.3	42.5	10.0	8.2		
		39.3	42.5	18.2			
특례기부금	응답 수	306	262	63	15	1	647
	비율	47.3	40.5	9.7	2.3	0.2	100.0
		47.3	40.5	9.7	2.5		
		47.3	40.5	12.2			
지정기부금	응답 수	1,186	569	198	24	1	1,978
	비율	60.0	28.8	10.0	1.2	0.1	100.0
		60.0	28.8	10.0	1.3		
		60.0	28.8	11.3			

법정기부금의 경우 2010년에는 '완전 강제적' 과 '다소 강제적' 이라는 응답이 8.2%였으나 2004년의 경우에는 4.62%로 비자발성이 커진 모습이다.

2004년 설문조사 결과를 기부금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2010년에는 '완전 강제적' 과 '다소 강제적' 이라는 응답이 8.2%였으나 2004년의 경우에는 4.62%로 비자발성이 커진 모습이며, 특례기부금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정기부금 역시 비자발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중립적' 인 응답까지 확대 하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2010년에는 18.2%이지만 2004년에는 19.24%로 오히려 2004년보다 2010년에 다소 비자발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서도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2004년보다 2010년에 비자발성이 낮아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비자발성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기부금에 해당한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 중 '완전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으며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1개가 있다.

〈표 4〉 2004년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출 동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응답 수	207	63	38	10	2	260
	비율	79.62	24.23	14.62	3.85	0.77	
					4.62		
		19.24					
특례기부금	응답 수	164	28	33	4	-	186
	비율	88.17	15.05	17.74	2.15	-	
					2.15		
		19.89					
지정기부금	응답 수	534	90	66	31	5	589
	비율	90.66	15.28	11.21	5.26	0.85	
					6.11		
		17.32					

1) 법정기부금

2010년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 재민 구호 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외, 기타 기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도와 비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는 353개로 이 중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영역에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3개 기업이고 평균 48억 2,467만원을 기부하였으며, 94개 기업이 기부금 납부가 자발적·중립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에는 22개 기업이 기부하였으며, 평균 1,924만원을 기부하였고, 이 중 17개 기업이 기부금 납부가 자발적·중립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과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부문에 기부한 135개 기업 중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총 24개에 이르며, 각각 16.8%와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정기부금 지출 기업은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에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법정기부금에 해당한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 중 '완전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으며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1개가 있다.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1개로 전체

응답의 8.2%를 차지하며, 이는 2004년의 3.75%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5〉는 2004년과 2010년의 설문조사에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에 응답한 업체를 비교한 결과로 2004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에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6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에 기부한 응답 수가 174개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발성에 대해서는 2004년의 경우에는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에 지출한 기부금이 '완전 강제적' 이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2곳이 있었지만, 2010년의 경우 법정기부금의 전체 영역에서 '완전 강제적' 에 응답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례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구성에 변화가 많이 있어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또 2011년부터 폐지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010년의 경우 법정기부금의 전체 영역에서 '완전 강제적' 에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표 5〉 2004년과 2010년 법정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

(단위: 개, %)

연도	지출항목	지출동기(N/%)				
		완전 자발적	다소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2004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15 (42.9)	11 (31.4)	6 (17.1)	3 (8.6)	-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6 (33.3)	5 (27.8)	3 (16.7)	2 (11.1)	2 (1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133 (78.7)	24 (14.2)	11 (6.5)	1 (0.6)	-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1 (54.3)	21 (22.3)	18 (19.1)	4 (4.3)	-
	기타	2 (50.0)	2 (50.0)	-	-	-
2010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25 (22.1)	49 (43.4)	20 (17.7)	19 (16.8)	0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7 (31.8)	9 (40.9)	1 (4.5)	5 (22.7)	0 -
	이재민 구호 금품	21 (46.7)	21 (46.7)	2 (4.4)	1 (2.2)	0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외	86 (49.4)	70 (40.2)	14 (8.0)	4 (2.3)	0 -
	기타기부단체	10 (40.0)	12 (48.0)	1 (4.0)	2 (8.0)	0 -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기업의 경우 전체 467개 응답 중 4개의 응답만이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6>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기업의 경우 전체 467개 응답 기업 중 4개의 기업만이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하여 0.9%를 차지하였고,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경우에는 한 개의 기업만이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술·장학·기술진흥, 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 기업은 575개로 이 중 7개, 1.2%만이 '다소 강제적' 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완전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6> 지정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만원, %)

	평균금액 (만원)	지 출 동 기 (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사회복지시설	빈도	468	270	168	25	4	0	467
	비율	11388.50	57.8	36.0	5.4	0.9	-	100.0
						0.9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빈도	448	315	95	34	1	0	445
	비율	2346.48	70.8	21.3	7.6	0.2	-	100.0
						0.2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단체	빈도	578	333	172	63	7	0	575
	비율	17680.70	57.9	29.9	11.0	1.2	-	100.0
						1.2		
기획재정부령지정 기부금단체	빈도	278	169	61	43	3	0	276
	비율	660.38	61.2	22.1	15.6	1.1	-	100.0
						1.1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빈도	75	31	21	22	1	0	75
	비율	10622.09	41.3	28.0	29.3	1.3	-	100.0
						1.3		
기타 기부단체	빈도	140	68	52	11	8	1	140
	비율	9552.71	48.6	37.1	7.9	5.7	0.7	100.0
						6.4		
					14.3			

다. 업종별 자발성 결과

2010년의 업종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표 7>을 통해 살펴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비자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 6.5%로 다른 영역에 비해 기부금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비율에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이고,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기부금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업종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만원,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제조업	응답 수	810	405	115	19	2	1,351
	비율	60.0	30.0	8.5	1.4	0.1	100
		60.0	30.0	8.5	1.5		
60.0		30.0	10				
건설업	응답 수	225	194	73	32	0	524
	비율	42.9	37.0	13.9	6.1	0	100
		42.9	37.0	13.9	6.1		
42.9		37.0	20				
도소매업	응답 수	224	219	59	4	0	506
	비율	44.3	43.3	11.7	0.8	0	100
		44.3	43.3	11.7	0.8		
44.3		43.3	12.5				
금융업	응답 수	95	65	26	13	0	199
	비율	47.7	32.7	13.1	6.5	0	100
		47.7	32.7	13.1	6.5		
47.7		32.7	19.6				
운수업	응답 수	102	12	2	1	0	117
	비율	87.2	10.3	1.7	0.9	0	100
		87.2	10.3	1.7	0.9		
87.2		10.3	2.6				
기타	응답 수	185	97	24	1	0	307
	비율	60.3	31.6	7.8	0.3	0.0	100
		60.3	31.6	7.8	0.3		
60.3		31.6	8.2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법인규모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 강제적' 과 '다소 강제적' 에 응답한 업체의 경우 대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법인규모별 자발성 결과

〈표 8〉을 통해 법인규모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 강제적' 과 '다소 강제적' 에 응답한 업체의 경우 대기업이 2.7%p 높으며, 중립적인 영역까지 확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5.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완전 강제적' 에 응답한 대기업은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표 8〉 법인규모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대기업	응답 수	253	237	73	27	0	590
	비율	42.9	40.2	12.4	4.6	0.0	100.0
		42.9	40.2	12.4	4.6		
		42.9	40.2	17.0			
중소기업	응답 수	1,388	755	226	43	2	2,414
	비율	57.5	31.3	9.4	1.8	0.1	100.0
		57.5	31.3	9.4	1.9		
		57.5	31.3	11.3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마. 분야별 기부금 지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기부금을 정리하면 〈표 9〉와 같으며, 각 분야별 기부금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다. 분야별 설문조사의 문항은 giving USA 및 UK giving과 같은 외국의 기부 관련 서적의 분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빈도는 각 영역에 대한 기부기업의 수를 나타내며, 비율은 각 분야에 기부한 기부액에서 지출동기의 자발성을 나타낸다. 복지 영역은 장애인 복지, 영유아 및 아동복지, 노인 복지, 노숙자 자활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종교분야에 기부한 응답기업은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 에 응답한 기업이 없었으며, 1%만이 '중립적' 에 응답하였다.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비자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더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기부 분야 중 두번째로 비자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의 경우에는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계산할 경우에는 33.5%의 기업이 해당되었다. 이는 국제적·전국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영역의 경우에는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계산할 경우에 13.2%이지만,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의 경우에는 7.2%에 이른다. 기타분야에 속하는 항목은 우리민족돕기운동, 상조금, 재해피해기금, 지역공단 행사 지원금 등 매우 다양하다.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비자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9〉 분야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종교	66.3	32.7	1.0	0.0	0.0	100.0
				0.0		
				1.0		
교육학술	42.0	49.6	7.1	1.3	0.0	100.0
				1.3		
				8.4		
시민사회 구축사업	76.1	17.9	3.0	1.5	1.5	100.0
				3.0		
				6.0		
건강	69.6	26.1	4.3	0.0	0.0	100.0
				0.0		
				4.3		
예술·문화	39.7	42.9	15.9	1.6	0.0	100.0
				1.6		
				17.5		
국제구호	48.4	46.3	4.7	0.5	0.0	100.0
				0.5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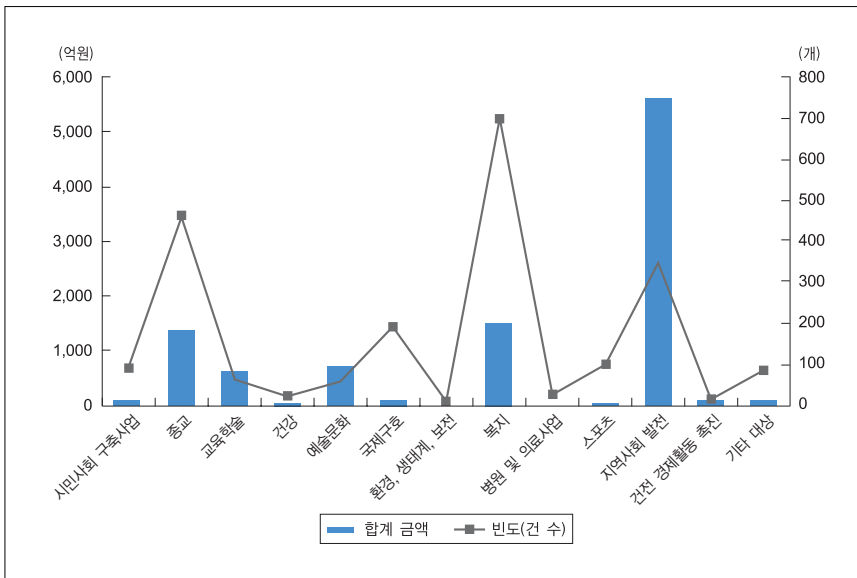
〈표 9〉의 계속

	지 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환경생태계보전	22.2	33.3	11.1	33.3	0.0	100.0	
				33.3			
				44.4			
복지	전체	58.0	30.9	10.5	0.6	0.0	100.0
					0.6		
					11.1		
	장애인 복지	62.8	35.5	1.3	0.4	0.0	100.0
					0.4		
					1.7		
	영유아 및 아동복지	56.7	41.0	2.0	0.3	0.0	100.0
					0.3		
					2.3		
	노인 복지	60.2	36.1	2.8	0.9	0.0	100.0
					0.9		
					3.7		
	노숙자 자활사업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스포츠	30.8	53.8	11.5	3.8	0.0	100.0	
				3.8			
				15.3			
병원 및 의료산업	55.2	31.4	12.4	1.0	0.0	100.0	
				1.0			
				13.4			
지역사회 발전	41.1	25.3	28.9	4.1	0.5	100.0	
				4.6			
				33.5			
건전 경제활동 촉진	18.2	81.8	0.0	0.0	0.0	100.0	
				0.0			
				0.0			
기타	53.0	33.7	6.0	6.0	1.2	100.0	
				7.2			
				13.2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기부금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기부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복지 영역에 가장 많은 기업이 기부하였으며, 교육·학술 영역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지역사회발전 영역이 그 다음이다.

기부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복지 영역에 가장 많은 기업이 기부하였으며, 교육·학술 영역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지역사회발전 영역이 그 다음이다.

[그림 1] 분야별 기부금 지출금액



2008년 전경련의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분야별 기부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사회복지, 교육·학교·학술연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 비중이 전체 기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분야별 기업기부의 지출 현황 및 분야별 비중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8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부가 41.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학교·학술연구 분야가 31.06%,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가 11.82%를 기록하였다.

2009년 기업
기부금 신고액은
3조 4,007억원이고
이 중 법정기부금
신고액은 9,437억원에
이르며,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9,516억원과
1조 5,054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10〉 2008 기업기부의 분야별 지출액 비중

(단위: 백만원, %)

분 야	총 집행액	금액 기준 비율
사 회 복 지	322,657	41.06
교육, 학교, 학술연구	244,066	31.06
문화예술평 및 체육	92,889	11.82
의 료 보 건	65,658	8.36
기 타	25,964	3.30
환 경 보 전	17,177	2.19
응급 및 재난구호	7,218	0.92
국 제 구 호 활 동	5,134	0.65
농 촌 지 원 활 동	5,086	0.65
계	785,849	100.00

주: 해당항목 응답기업 175개사 기준
자료: 전경련,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재구성

Ⅲ.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 추정

2009년 기업 기부금 신고액은 3조 4,007억원이고 이 중 법정기부금 신고액은 9,437억원에 이르며,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9,516억원과 1조 5,054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11〉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단위: 억원, %)

		2009 기부금액 ¹⁾	법인세율	지출동기 ²⁾	준조세에 포함되는 규모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법정기부금	9,437	22	8.2	604
	특례기부금	9,516	22	2.5	186
	지정기부금	15,054	22	1.3	153

주: 1) 2009 기부금액은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 표의 2009년 기부금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속하는 신고분을 의미함.

2) 지출동기는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응답수의 비율을 말함.

각 기부금별로 손금산입의 한도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기부의 대부분이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액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비중은 8.2%로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는 9,437억원×0.082(비자발적 비중)을 계산하면 774억원이며, 이에 손금산입을 고려하여 (1-0.22)를 곱하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그 결과 약 604억원이 준조세성 기부금 규모에 해당된다.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는 774억원이며, 약 604억원이 준조세성 기부금 규모에 해당된다.

같은 방법으로 특례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516억원×0.025(비자발적 비중)×(1-0.22)이며, 약 186억원이 해당된다. 지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1조 5,054억원×0.013(비자발적 비중)×(1-0.22)이며, 약 153억원이 해당된다.

〈표 12〉는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까지 확대할 경우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에 포함되는 각 기부금의 규모를 나타낸다.

〈표 12〉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단위: 억원, %)

		2009 기부금액 ¹⁾	법인세율	지출동기 ²⁾	준조세에 포함되는 규모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9,437	22	18.2	1,340
다소 강제적	특례기부금	9,516	22	12.2	906
중립적	지정기부금	15,054	22	11.3	1,327

주: 1) 2009 기부금액은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 표의 2009년 기부금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속하는 신고분을 의미함.

2) 지출동기는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 이라고 응답한 응답수의 비율을 말함.

같은 방법으로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437억원×0.182(비자발적 비중)×(1-0.22)으로 약 1,340억원이 해당된다. 또한 특례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516억원×0.122(비자발적 비중)×(1-0.22)으로 약 906억원이 해당되며, 지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는 1조 5,054억원×0.113(비자발적 비중)×(1-0.22)으로 약 1,327억원이 해당된다.

〈표 13〉은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에 따라 추정된 전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 2009년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

(단위: 억원)

		기부금 준조세액
기부금 I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943
기부금 II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	3,573

주 1. 기부금 I은 '다소 강제적' 및 '완전 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는 기부금 I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참고문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각 연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각 연도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용 종합 보고서』, 각 연도
 손원익·김상현·김진수·박기백·한도숙,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
 조세연구원, 1998. 12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현,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한국조
 세연구원, 2004. 12
 손원익, 『기업의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GivingUSA foundation, “Giving USA 2009,” 2009
 UK Giving 2009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ecpmh@kipf.re.kr)

I. 연구 배경

조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부과지방식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지방식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 권한을 과세권자인 정부에만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과지제도하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한편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자 스스로가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게 된다.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에 관한 조세행정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부과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이행은 과세관청이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납세자에 비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조세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경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 등과 같이 납세 불순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포함된다. 한편, 비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납세의식 또는 조세문화(tax culture)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연구한 다수의 문헌들은 낮은 세무조사 비율 등으로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만으로는 납세자들의 납부행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의식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납세자들의 납부행태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Reckers et. al, (1994); Wenzel (2002); Frey & Feld (2002); Torgler(2002); Torgler & Schneider(2005)).

이와 같이 조세행정의 주된 관심대상인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8년 5월에 이어 2010년 3월에 시행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에 관한 제2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납세의식 측정방법 개관

1. 납세의식 개념 정립

일반적으로 납세의식은 세금을 기꺼이 내는 납세자의 마음자세 또는 태도로 좁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을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가진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나타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어려운 사회적인 현상인 납세의식을 단일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의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납세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s)로 주된 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한 후 주된 지표로는 ①성실납세 의향 지표와 ②납세순응행위 지표를 사용하고, 보조지표로는 ①조세형평도 지표와 ②조세이해도 지표를 선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변수 또는 하나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결과에 기초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 납세의식에 대한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납세 의향을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외국연구를 보면 협의의 납세의식과 유사한 개념인 납세윤리(tax morale)를 납세에 대한 내재적 동기(the 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 납세를 기꺼이 하는 마음상태(taxpayers' willingness to pay taxes), 납세순응에 대한 마음가짐(an attitude regarding tax compliance)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측정함에 있어서 협의의 납세의식을 나타내는 성실납세 의향을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성숙한 납세의식을 나타낸다고 상정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의향이 뜻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에 성실납세 의향 지표가 납세의식 수준의 전부가 아닌 일정 부분만을 나타낸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납세순응행위도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는 성실납세 의향이 반드시 성실납세행위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간에 성실납세 의향은 동일하지만 경제적 제약 등의 이유로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는 자와 동일한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납세순응을 하는 자 간에 납세의식 수준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납세순응행위 자체가 모든 경우에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하의 우리나라 상황이나 독재정권하에 있는 국가의 상황에서 법에 순응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및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납세의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주하였다. 특히 조세형평도 지표는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평가할수록 납세순응행위가 낮다는 형평이론(equity theory, Adams 1963)에 기초하여 보조지표로 선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납세의식 형성에 필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세법이나 세정의 허점(loop-hole)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활용될

본고에서는 납세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된 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한 후 주된 지표로는 ①성실납세 의향 지표와 ②납세순응행위 지표를 사용하고, 보조지표로는 ①조세형평도 지표와 ②조세이해도 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실납세 의향 지표는 납세자가 자발적인 동기나 비자발적인 동기를 막론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을 종합한 지표이다.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실제적/가상적 경험들을 종합한 지표이다.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이해도 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 납세의식 관련 각종 지표 생성 방법

본 연구에서 상정한 납세의식의 주된 지표들과 보조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2~4가지 설문항목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성실납세 의향 지표는 납세자가 자발적인 동기나 비자발적인 동기를 막론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을 종합한 지표로서 다음 3가지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되었다.

- ① 세금 납부할 때 적극적·긍정적 의향, 범죄행위로서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 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 ② 자영업자라면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정직하게 납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 ③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성실납부 의향을 묻는 질문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실제적/가상적 경험들을 종합한 지표로, 실제납세순응도 지표와 가상납세순응도 지표로 구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다음과 같이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질문들과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부터 생성되었다.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
- ① 지난 3년 동안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대 계상했는지 여부
 - ②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축소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③ 지난 3년 동안 매출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대하게 신고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

- ① 레스토랑(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7천만원과 현금 매출액 1천만원 등 총매출액이 8천만원임)을 운영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국세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없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신고할지 여부
- ② 가전제품(3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5%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에 대한 태도

보조지표 중의 하나인 조세형평도 지표는 납세자가 현행 조세제도를 통해 체감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및 교환의 형평성을 종합한 것으로 다음 3가지 질문으로 생성되었다.

- ①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의 평가
- ② 본인의 세금과 비교시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에 대한 평가
- ③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 시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 및 관련 법규와 조세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조세이해도 지표이다. 따라서 조세이해도 지표는 주관적인 세금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1가지 질문문항과 기본적인 세법 및 세무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묻는 3가지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① 본인이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② 부가가치세율(10%), 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9억원),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모든 거래 금액)

본 연구에서는 2~4가지 설문항목의 응답으로부터 각 개별 지표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관련된 각각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긍정 또는 부정, 즉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다음 각 설문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를 생성하였다.

조세형평도 지표는 납세자가 현행 조세제도를 통해 체감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및 교환의 형평성을 종합한 것이다. 조세이해도 지표는 세법과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3월
실시한 2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Ⅲ.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조사(2008년 5월 시행)와 마찬가지로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와 팩스 및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된 유효표본은 취업자 1,966명과 실업자 234명 등 총 2,200명이다.

이러한 유효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국을 16개 시·도별로 층화한 후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자영업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분할그룹(segmentation)마다 할당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만, 종사상 지위 중 미취업자의 표본은 조사취지를 고려하여 강제표본 할당을 실시하였다¹⁾.

2. 기술통계량 요약²⁾

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 변수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약 53.3%이고, 나머지 지역이 46.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9.0%,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0.7%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 포함)이 48.7%, 고졸 35.1%, 중졸 이하 10.4%, 대학원졸 이상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형별로는 무교가 4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신교 26.3%, 불교 21.2%, 천주교 9.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 실제 조사된 2,200명의 표본구성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기술통계량은 가중치를 고려한 값임.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전 체		2,200	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38	79.0
	배우자 없음	456	20.7
	무응답	6	0.3
학 력	중졸 이하	228	10.4
	고졸	773	35.1
	대졸	1,071	48.7
	대졸 이상	115	5.2
	무응답	13	0.6
종 교	개신교	578	26.3
	천주교	203	9.2
	불교	466	21.2
	기타 종교	15	0.7
	없음	937	42.6
	무응답	1	0.0

가중치를 고려한
응답자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사업주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연평균 소득수준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81.2%로 나타났으며, 이 중 1천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4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91.7%이고, 이 중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64.5%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 약 30.3%를 차지하여 여성의 평균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 63.0%로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사업주는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 27.2%, 8천만원 이상이 12.4%로 전체의 39.6%가 4천만원 이상의 소득자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사업주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발적인 경우 및 비자발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2%)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연평균 소득수준 분포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체		2,200	43.8	37.4	12.7	6.0
성별	남성	1,043	20.9	48.8	22.0	8.3
	여성	1,157	64.5	27.2	4.4	3.9
연령	25~29세	279	47.5	50.0	2.0	0.6
	30~39세	642	39.5	42.5	12.5	5.5
	40~49세	605	36.4	34.1	21.7	7.8
	50~59세	467	44.8	35.0	12.5	7.7
	60~64세	208	71.6	20.4	2.3	5.7
학력	고졸 이하	1,000	56.2	33.6	8.3	1.8
	대졸 이상	1,186	33.3	40.8	16.4	9.5
	무응답	13	46.6	29.7	23.7	0.0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859	8.0	63.0	19.6	9.4
	자영업자/사업주	367	9.6	50.7	27.2	12.4
	무급가족종사자	92	87.6	8.7	1.7	2.0
	미취업자	882	88.4	10.0	1.2	0.4

나. 납세의식 지표 관련 변수

1) 성실납세 의향 지표

성실납세 의향 지표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에 관한 질문과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및 부동산 거래시 관련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생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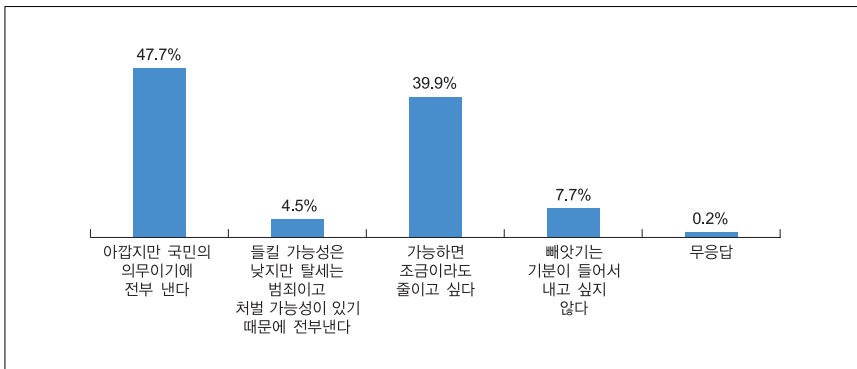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드는 생각에 대한 질문의 경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는 응답의 비율은 47.7%이고, 탈세는 범죄행위이고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낸다는 소극적인 성실납세 의향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약 4.5%,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39.9%,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은 7.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발적인 경우 및 비자발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2%)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성실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

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다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의 성실납세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 타 근로 형태에 비하여 성실납세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거래 가정시 관련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성실납세 의향을 나타냈다.

[그림 1]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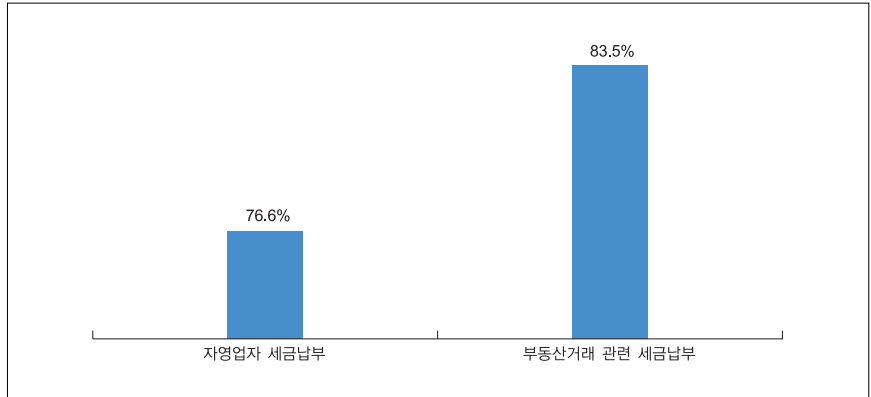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를 가정한 경우 10명 중 7명 이상(76.6%)이 성실납세 의향을 나타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사업주 계층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다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의 성실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지역(광역시 및 기타 시도) 거주자에 비하여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소득 계층의 성실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부동산 거래 가정시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성실납세 의향을 나타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연령대보다 40대에서, 타 근로형태보다 자영업자/사업주 계층이 소득의 축소신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 의향



2) 납세순응행위 지표

가)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과거 3년 동안에 소득의 축소신고 및 공제 과대계상 경험,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매출의 축소신고 및 비용 과다 신고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생성되었다. 소득의 축소신고 등의 경험 여부의 경우 전체의 96.0%가 소득의 축소신고 및 공제의 과대계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연령대보다 40대에서, 타 근로형태보다 자영업자/사업주 계층이 소득의 축소신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 축소신고 및 공제 과대계상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축소신고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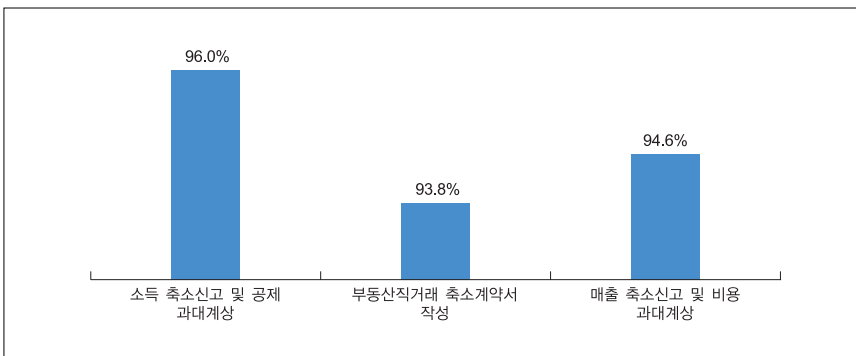
한편, 과거 3년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유효 응답자의 6.2%가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이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가 타 계층에 비하여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취업자 기준). 또한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복권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3년간 사업자로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매출

의 축소신고 및 비용의 과대계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0대 및 60대 계층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보다는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매출의 축소신고 및 비용의 과대계상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거래 제안에 응하겠다는 응답자는 32.6%로 나타났으며, 5% 할인 제안은 거절하지만 10% 할인 제안시에는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는 응답자는 44.5%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실제 납세순응행위도(유효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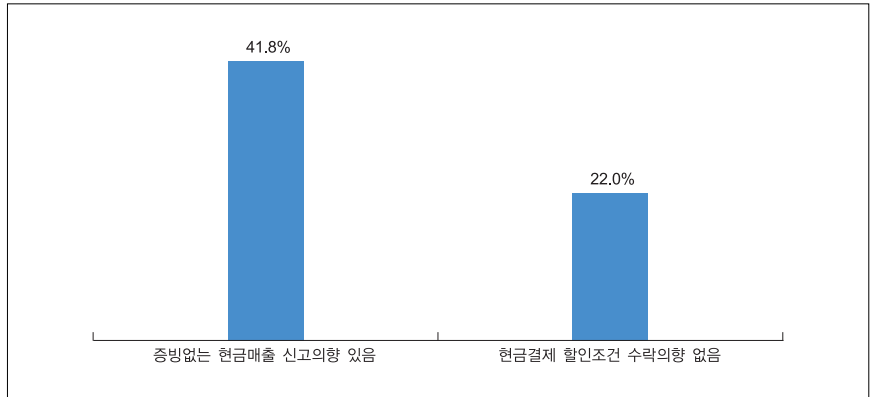
나)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두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 상황 속에서 응답자들이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생성되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국세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없는 현금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41.8%)가 '신고하겠다' 라고 응답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비수도권 거주자보다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고하겠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고하겠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금으로 결제시 5%의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업주의 현금거래 제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만이 '현금거래 유도는 업주의 세금회피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사업주가 타 근로 형태에 비하여 현금거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60대, 소득수준별로는 8천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현금거래 제안 거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거래 제안에 응하겠다는 응답자는 32.6%로 나타났으며, 5% 할인 제안은 거절하지만 10% 할인 제안시에는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는 응답자는 44.5%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4.3%만이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반면, 64.4%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가상 납세순응행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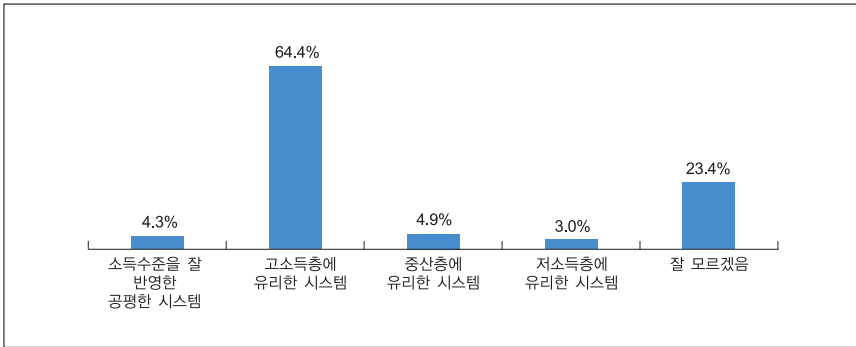


다)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형평도 지표는 현행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생성한 지표이다.

현행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3%만이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반면, 64.4%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유형별로도 대부분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60대, 소득수준별로는 8천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 현행 조세제도가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잘모르겠다' 라는 응답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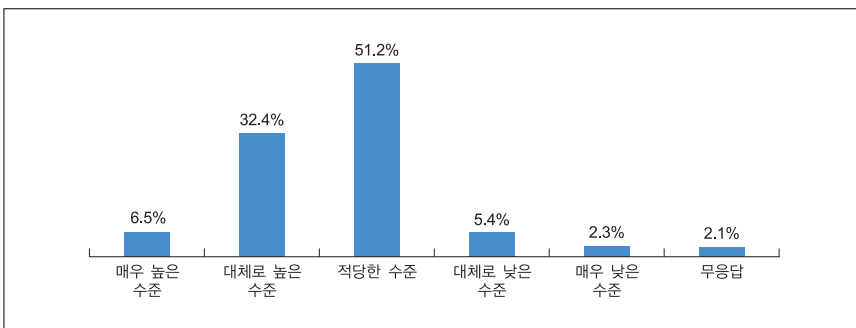
[그림 5]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본인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납세자 그룹과 비교한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2%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본인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납세자 그룹과 비교한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2%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50대,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 자영업자/사업주 계층에서 세부담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비율이 타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하여 현행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세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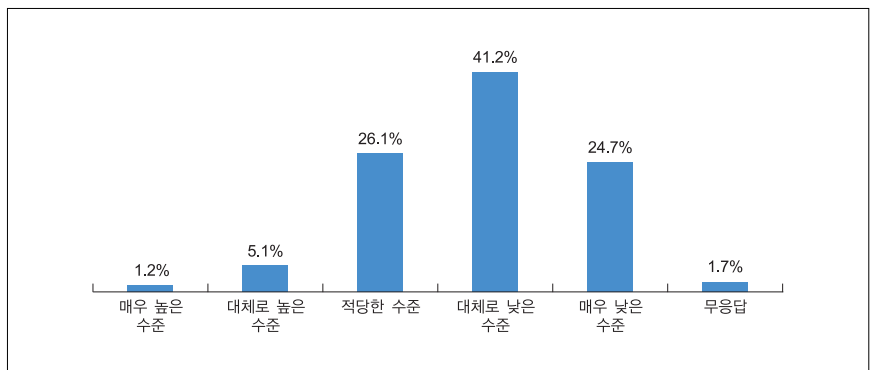


교환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할 때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의 수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5.9%가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자신들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수준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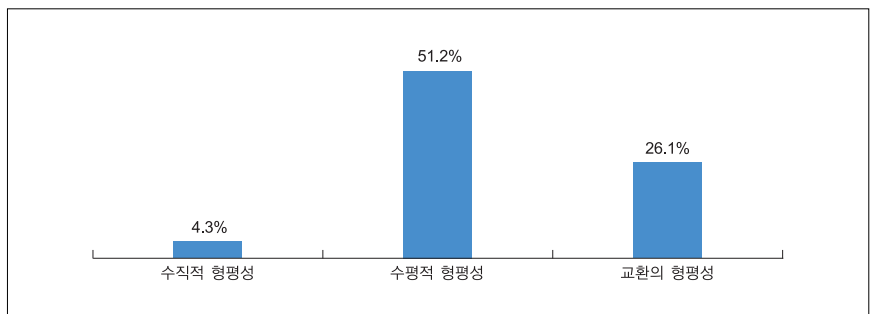
납부한 세금수준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하여 정부혜택에 대한 체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혜택에 대한 체감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정부혜택 수준)



한편,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3가지 형평성 중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적정하다'는 평가가 가장 낮고(4.3%), 다음으로 교환의 형평성이 낮게 평가(26.1%)되었다.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2%)가 '적정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조세형평성별 '적정하다'라는 평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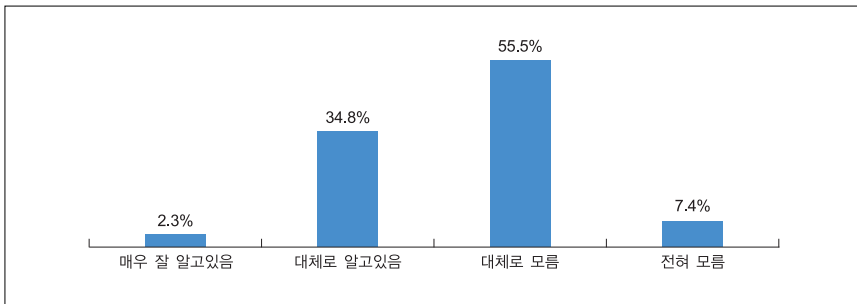
라) 조세이해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한 인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표이다.

주관적인 조세이해도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37.1%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음 : 2.3%, 대체로 알고 있음 : 34.8%)'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 조세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자영업자/사업주의 주관적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41.4%) 이어 임금근로자(38.1%), 무급가족종사자(3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연평균 소득 8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모르겠다' 라는 응답비율은 62.9%(전혀 모름 : 7.4%, 대체로 모름 : 55.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경우 '9억원'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6.1%인 반면 기준 기준금액인 '6억원'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주관적 조세이해도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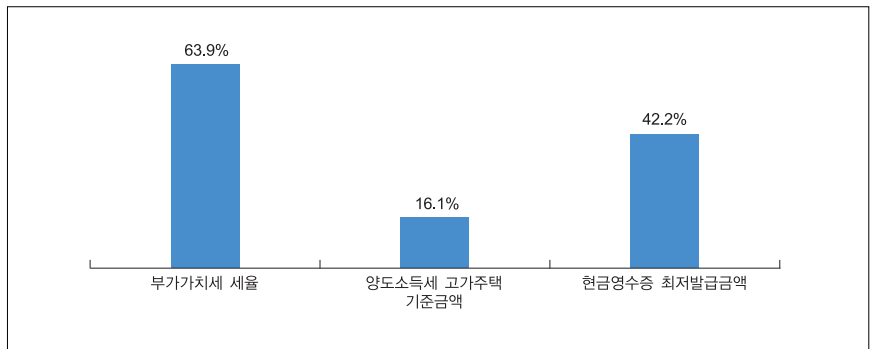


한편 객관적 조세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과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경우 응답자의 약 63.9%가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경우 '9억원'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6.1%인 반면 기준 기준금액인 '6억원'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평균 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금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득의 축소신고 및 공제의 과다계상, 부동산거래 축소계약서 작성, 매출의 축소신고 및 비용의 과다계상 등의 납세불순응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을 '9억원'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약 10~20%p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금액에 상관이 없다'라고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42.2%로 가장 많았고, 과거 발급기준금액이었던 5천원이 최저금액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4%로 나타났다.

[그림 10] 객관적 조세이해도: 정확도



3. 납세의식 지표 생성

성실납세 의향 지표, 납세순응행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 및 조세형평도 지표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성실납세 의향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70.7점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세금의 성실납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64.4점으로 10명 중 6명 이상은 납세순응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거 3년간의 실제 납세순응 여부에 대한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97.1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득의 축소신고 및 공제의 과다계상, 부동산거래 축소계약서 작성, 매출의 축소신고 및 비용의 과다계상 등의 납세불순응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 의향 지표에 비하여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성실납세 의향은 낮아도 실제로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의 이유로 수동적인 납세순응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자영업자로서 현금매출액 신고누락 및 현금구매 할인제안 수락 등과 같은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31.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와의 큰 격차는 설문에서의 가상 순응행위에 대한 질문들이 탈세행위의 발각 및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즉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수동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납세의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제 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서 가상 납세순응행위 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석들이 실제 납세순응행위와 가상 납세순응행위 간의 큰 격차로 인하여 상당히 왜곡된 결과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조세이해도 지표는 100점 만점에 평균 39.8점, 조세형평도 지표는 100점 만점에 평균 45.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납세의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제 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서 가상 납세순응행위 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석들이 실제 납세순응행위와 가상 납세순응행위 간의 큰 격차로 인하여 상당히 왜곡된 결과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표 Ⅲ-3〉 개별 지표의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된 지표	성실납세 의향	70.7	31.01	0.0	100.0
	납세순응행위	64.4	18.06	0.0	100.0
	- 실제 납세순응행위	97.1	11.72	0.0	100.0
	- 가상 납세순응행위	31.9	33.48	0.0	100.0
보조 지표	조세이해도	39.8	26.17	0.0	100.0
	조세형평도	45.1	21.45	0.0	100.0

개별 지표들을 소득수준, 교육수준, 자영업자 여부 등의 주요 인구 특성 외 생변수와 연계하여 각 그룹별 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 별로는 4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가상 납세순응행위 및 조세이해도 지표에서만 4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성실납세 의향, 전체 납세순응행위, 실제 납세순응행위, 조세형평도 측면에서 고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실납세 의향 및 전체 납세순응행위 지표,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조세이해도를 제외한 모든 지표

자영업자는 성실납세 의향, 가상 납세순응행위, 조세이해도 측면에서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자는 전체 납세순응행위, 실제 납세순응행위, 조세형평도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세이해도 지표의 경우 조세제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질문들³⁾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학력 계층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납세순응행위 지표 및 조세형평도 지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두 계층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는 성실납세 의향, 가상 납세순응행위, 조세이해도 측면에서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자는 전체 납세순응행위, 실제 납세순응행위, 조세형평도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성실납세 의향 및 전체 납세순응행위,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교의 경우 유종교자가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무종교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납세순응행위 지표(전체/실제/가상) 및 조세이해도 지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성실납세 의향, 실제 납세순응행위, 조세형평도 지표의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성실납세 의향, 실제 및 가상 납세순응행위, 조세이해도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권구입 경험이 있는 위험선호자는 조세이해도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실납세 의향, 전체 납세순응행위,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복권구입 경험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객관적 질문은 ①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 ② 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 기준금액, ③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금액에 관한 질문을 의미

〈표 Ⅲ-4〉 인구 특성 변수별 개별지표 기술통계량

구분	주된 지표				보조지표	
	성실납세 의향	납세순응행위			조세 이해도	조세 형평도
		전체	실제	가상		
고소득(4천만원 이상)	66.8	63.8	94.8	33.8	50.1	42.1
저소득(4천만원 미만)	71.7	64.5	97.6	31.6	37.4	45.8
고학력(대졸 이상)	69.7	64.2	96.7	31.9	44.3	45.2
저학력(고졸 이하)	72.0	64.5	97.4	31.6	34.6	45.1
자영업자	69.9	63.2	92.1	34.4	45.1	41.7
비자영업자	70.9	64.6	98.1	31.4	38.8	45.8
유종교자	72.4	65.0	97.2	32.9	39.0	46.0
무종교자	68.6	63.5	96.9	30.5	40.9	44.0
여성	71.9	63.8	97.9	29.9	36.9	45.7
남성	69.4	65.0	96.2	34.1	43.1	42.8
복권구입 경험 있음	67.3	63.6	96.9	30.5	40.4	43.8
복권구입 경험 없음	73.5	65.0	97.2	33.0	39.3	46.2

주: 색깔이 칠해진 셀에서 글자가 굵은 것은 5% 유의수준, 색깔만 칠해진 셀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

주된 납세의식 지표
(성실납세 의향 및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들 간의 비교 분석

가. 주된 납세의식 지표

성실납세 의향 지표의 경우 2008년에 실시된 1차 조사에 비해 약 5.3% 상승(1차 조사: 67.2점 → 2차 조사: 70.7점)하였고, 또한 이러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1차 조사에 비해 약 1.7% 상승(2008년 : 63.3점 → 2010년 : 64.4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5% 기준). 실제 납세순응행위 및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 역시 2차 조사에서의 점수가 1차 조사에서의 점수보다 상승하였지만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된 납세의식 지표(성실납세 의향 및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혐의의 납세의식을 나타내는 성실납세 의향 지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조세이해도 지표
감소는 2008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인상(6억원 → 9억원)
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보조 납세의식 지표

주관적 조세이해도 및 객관적 조세이해도(부가가치세 세율,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최저 발급금액)로 구성되는 조세이해도 지표의 경우 1차 조사에 비해 15.8% 감소(1차 조사: 47.3점 → 2차 조사: 39.8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런 조세이해도 지표 감소는 2008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인상(6억원 → 9억원)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조세제도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잦은 세법개정을 자제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조세형평도 지표의 경우 1차 조사에 비해 2.4%의 비율로 소폭 상승(1차 조사: 44.1점 → 2차 조사: 45.1점)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 Ⅲ-5〉 개별 지표의 기술통계량 비교

구분	평균	1차 조사 (2008년 5월)		2차 조사 (2010년 3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된 지표	성실납세 의향*	67.2	33.65	70.7	31.01
	납세순응행위**	63.3	18.35	64.4	18.06
	- 실제 납세순응행위	96.7	13.15	97.1	11.72
	- 가상 납세순응행위**	30.0	33.52	31.9	33.48
보조지표	조세이해도*	47.3	29.18	39.8	26.17
	조세형평도**	44.1	21.52	45.1	21.45

주: *, **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납세의식을 조세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의식구조 및 가치관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관측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

4) 10%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다. 협의의 납세의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실납세 의향 지표는 2010년 3월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7.2점으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 정도가 성실납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측면에서 납세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63.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96.7점인 반면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30.0점으로 실제 납세순응행위와 가상 납세순응행위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조지표로 사용된 조세이해도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49.8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형평도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44.1점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에 실시된 1차 조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성실납세 의향 지표와 납세순응행위 지표 및 조세형평도 지표는 개선된 반면 조세이해도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 의향 지표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균값을 가진 계층은 고소득, 고학력, 무종교자, 위험선호자 및 30대와 4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소득·고학력 및 30~40대의 남성 임금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협의의) 납세의식 향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 2차 조사에서는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평균 약 97점으로 성실납세 의향 지표보다 약 30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서 실제로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및 세원투명성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⁵⁾.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는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납세상황을 설정한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점수가 겨우 30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적발 및 처벌 가능성과 세원 투명성을 이유로 행하는 실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적인 납세상황 속에서는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서는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및 처벌 강화가 성실납세 의향이 낮은 계층의 정직한 세무보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와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 간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들의 분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⁶⁾. 따라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분석은 실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거나, 기타 연구자들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및 처벌 강화가 성실납세 의향이 낮은 계층의 정직한 세무보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5) 박명호·김봉근·김정권(2008) 또는 박명호(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6) 박명호·김봉근·김정권(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분석은 실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거나, 기타 연구자들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KIPF

<참고문헌>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12.
 박명호,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사)한국납세자연합회 · 한국조세연구원 주관 <세계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9.6.

Frey, Bruno S. and Lars P. Feld, “Deterrence and Moral in Taxation: An Empirical Analysi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76, 2002.
 Reckers, Philip. M., Debra L. Sanders and Stephen J. Roark, “The Influence of Ethical Attitudes on Taxpayers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4, 1994, pp. 825~836.
 Torgler, Benno, “Speaking to Theorists and Searching for Facts: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in Experiment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 16, No. 5, 2002, pp. 657~683.
 Torgler, Benno, and Friedrich Schneider, “Attitudes Towards Paying Taxes in Austria: An Empirical Analysis,” *Empirica*, Vol. 32, No. 2, 2005, pp. 231~250.

〈부표〉 제2차 설문조사 표본구성

(단위: 명, %)

구분	연령	합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남자	25~29세	109	94	6	1	8
		(5.0)				
	30~39세	318	224	86	1	7
		(14.5)				
	40~49세	415	252	155	2	6
		(18.9)				
50~59세	304	151	138	1	14	
	(13.8)					
60~64세	102	40	53	0	9	
	(4.6)					
소계	1,248	761	438	5	44	
		(56.7)	(34.6)	(19.9)	(0.2)	(2.0)
여자	25~29세	119	98	4	2	15
		(5.4)				
	30~39세	265	166	30	19	50?
		(12.0)				
	40~49세	280	140	58	33	49
		(12.7)				
50~59세	220	75	63	31	51	
	(10.0)					
60~64세	68	17	16	10	25	
	(3.1)					
소계	952	496	171	95	190	
		(43.3)	(22.5)	(7.8)	(4.3)	(8.6)
합계		2,200	1,257	609	100	234
			(100.0)	(57.1)	(27.7)	(4.5)

주: 1. 괄호 안은 전체 인원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

2. 동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책토론투리포트

■ 재정통계 개편안

* 본 원고는 2011년 1월 26일 15:00~18: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주관)과 민간합동작업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이 주최한 「재정통계 개편안」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재정통계 개편안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재정통계 개편안
 - 일 시 2011. 1. 26(수), 15:00~18: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5:10~17:5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6:15~17:3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 발 표 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재정통계 개편안』
 - ▶ 토 론 자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김명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교수)
 -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심상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가나다 순)
- 17:5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8:00 **폐회**



주제발표 요약

■ 재정통계 개편 추진 배경

-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도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
- 최신 국제통계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재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가채무 규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음

■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국내 재정통계 기준을 현행 '86 GFS에서 최신 기준인 '01 GFS 등으로 전환하여,

* IMF의 20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U의 1995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UN의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범위를 중앙·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하여 국제기준상의 일반정부*로 재설정하는 한편,

*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 중앙·지방정부 간 및 정부·한은 간의 통계기준 불일치 등 국내 재정통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두었음

■ 개편안 주요 내용

- ① **(회계기준)** 현금주의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발생주의 회계기준상 부채, 수입·지출 항목 포함
- **(현행)** 현금주의 채무(국채, 차입금 등)와 수입·지출
- (개편)** 기존 채무와 수입·지출 외에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 등)와 수익·비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포함

- ② **(정부 포괄범위)** 최신 국제기준상 분류기준*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총 24개 중 20개)과 비영리공공기관(총 282개 중 145개)을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미만이면 일반정부로 분류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기금(정부관리기금 40개)

(개편)* 일반회계, 특별회계(15개), 기금(60개), 비영리공공기관(145개)

*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우정사업 3개 특별회계(우편·보험·예금)와 4개 기금(사학연금·사학진흥·국민체육진흥·주택금융신용보증), 137개 공공기관(NH, 수자원공사 등)은 제외

- ③ 연금 총당부채 및 내부거래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국가부채에 미포함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총당부채는 부채에는 포함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총당부채도 영·미·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채규모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부채에 미포함

- 정부 포괄범위 내의 회계·기금 등 간의 내부거래는 국제기준에 따라 모두 제외하되,

-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연금의 국제 보유규모는 기존 재정통계에 포함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공개할 계획

- ④ 한국은행과 재정통계 기준 일치화

- 그간 한국은행은 '93 SNA 등 국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부 포괄범위, 국가부채, 수입·지

출 항목 등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정부 통계와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그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

- ⑤ 지방재정통계도 원칙적으로 중앙재정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

■ 이번 재정통계 개편에 따라 그간 국내 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던 발생주의 부채 및 수입·지출 항목과 비영리공공기관 등이 추가되고 정부와 한은 통계 간의 불일치 등이 해소됨으로써 재정통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 아울러, 최신 국제기준 적용에 따라 통계의 객관적 국제비교 및 재정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재정운용의 실효성 및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조례 등으로 관리는 되고 있으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국가재정통계 개편안과 연계하여 지방재정통계 또한 개편하여 지방재정 운용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겠다. 금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편안 마련돼야

김동열 /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어려운 작업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재정통계 개편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이번 계기를 잘 살려서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국가부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먼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활용하여 정부의 예산외지출(Off Budget)을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이를 줄이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본 개편안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일반정부가 아닌 공기업(준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고심하여 결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하는 등 후속작업은 별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지방정부와 관련된 회계 및 기금이 5,000여 개에 달하고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500여 개에 이르는 등 지방정부와 관련된 기관 및 재정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팽창을 통제하는 기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넷째, 공기업으로서 원가보상률이 굉장히 높은 기관들이 많

토론 요약

지방재정통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할 터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지방통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도록 하겠다.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따라 자산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 정보를 생산하자는 데 대해 공감한다. 지방재정통계와 관련하여 국가통계 개편 방안을 준용하여 지방공단을 통계범위에 포함하고, 지방통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겠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각종 지방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연구원 등은 통계

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원가보상률 360%), 기업은행(120%), 산업은행(390%) 등이며, 이처럼 원가보상률이 높은 공공기관이 계속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USPS(우편서비스국)의 경우 금융 기능이 없고 내부적으로 정부기업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도 보편적 서비스 또는 기본적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개편 작업을 할 때 이와 같은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재정통계 개편으로 정부부문 통계 차이 해소

김명기/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TF에 참가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거시경제 통계의 편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범위 TF가 발족할 때 오늘 발표된 재정통계 개편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다.

Globalize된 환경에서 경제통계의 국제적 신뢰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통계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수용하여 투명하게 작성되면 신뢰가 쌓이는 반면 국제기준과 다르게 작성될 경우에는 자칫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IMF의 재정통계 국제기준인 2001 GFS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재정통계가 매우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UN, IMF, World Bank, OECD, EC 등 5개 국제기구는 국민계정체계(SNA)를 기본으로 하고 통화, 재정, 국제수지, 물가 등 부문별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통계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5대 국민계정통계의 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1993 SNA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기준인 2008 SNA의 이행을 미국 등 주요국과 비슷한 시기인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서 TF 작업과정에서 2008 SNA에서 권고하는 내용까지 이번 재정통계 개편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상이한 통계기준의 적용으로 재정통계(GFS)와 국민계정(SNA)의 정부부문 통계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 SNA 3장 3.58~59에서 사회부담금은 이전거래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군인·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총당부채의 경우 GFS에서는 일반정부의 부채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SNA chapter 11에서 일반정부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며, ②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직역연금 총당부채를 정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SNA는 경제를 크게 일반정부, 금융기관(중앙은행 포함), 비금융법인기업, 개인, 국외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기본적으로 non-consolidation을 계리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consolidation(통합)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chapter 22의 22.14에서 정부 내부의 부채는 gross figure보다 consolidate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내부거래로 보아 제외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재정통계에서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고 부기하여 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받는 데는 국제기준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기업이 대신하는 정부사업, 정부부채에 포함돼야

김유찬/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교수)

민간합동작업반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이 국제적인 비교를 위함이 큰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복지재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의 주체(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목적이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준에 100% 완전히 부합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도움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독립적 제도 단위와 관련하여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자금운용을 별도로 한다는 기준인데 모양만 갖추고 내용을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가보상률(50% 기준)과 관련하여 만약 기준을 70%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어떻게 시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매출이 원가 미만인데도 어떻게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지 원가보상률(50%)을 바탕으로 한 기준에 의문이 든다. 즉 재정지원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데, 기본적인 기준 이외에 실제 적용에 있어 조금 더 자세한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남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상세한 해외 사례를 추가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LH공사(115.4%), 수자원공사(110.6%) 등 원가보상률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부

실 매출채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을 고려한다면 제시된 원가보상률이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학연금과 같은 경우 원가보상률이 725.8%인데 다른 회사에 적용하는 원가보상률 계산법을 기금에 적용하여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금에 맞는 원가보상률 계산법을 사용한다면 실태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의 개편안으로서는 정부의 재정통계가 현재 상황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정부사업을 공기업에서 대신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정부부채에 포함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연금부채 충당금이 정부부채에서 제외되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정부의 지불의무가 있는데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회계의 관점에서 BTL과 관련된 선수금, 미지급금을 부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은 특별한 설명 없이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

원가보상률 기준, 타당한지 의문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다양한 의견 개진의 차원에서 금번 개편안을 기술적인 세부 내용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인지에 대해 방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의 범위나 정부부채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번에 제시된 네 가지 원칙 중 발생주의 부분은 국

제적 기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크게 없지만, 직역연금의 충당부채와 내 부거래 제외시 어떤 부분은 부기, 어떤 부분은 별도 명기하도록 하는 등 표시기준이 복잡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부기를 통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 통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정부 공기업 부분에 대해 원가보상률(50%) 기준이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국제기준으로는 맞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인지 우려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외국과 다른 이런 환경에서 일률적으로 50%의 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 개편안에서는 국민연금 및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LH공사의 부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이슈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재정통계를 산출하되,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사실상의 국가부채 관리 의지 보여야

심상복/중앙일보 논설위원

국가재정통계를 만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제비교를 위함이고, 둘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같은 기준을 따라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현황 파악과 의미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두 가지 목적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기준은 원가보상률이 50%인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 빚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원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LH공사의 원가보상률은 100%가 넘어 얼마간 이익을 내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공기업의 부채는 125조원에 이른다. 지금의 원가보상률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금과 관련된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부채라 제외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가보상률은 부채(stock)개념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매출과 생산원가를 따지는 플로우(flow)개념이다. 따라서 어떻게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국가채무에 145개 공공기관은 포함되었고 다른 137개 기관은 제외됐다. 숫자로는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조금 많지만 부채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137개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국가부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이들 기관이 지고 있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합동팀이 지난 2년간 수고해 이번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하나 사족을 붙이자면 다른 사람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적용 상황은 나라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기 때

문이다.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협조와 역할 중요

안종범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논란들이 종식되길 바라며, 금번 개편안을 통해 채무의 총량보다는 이를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많은 채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계에서 제외되었다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집권 정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양측 모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보증채무와 관련된 많은 논란 속에서 정작 실질적인 관리는 소홀하게 된 사례를 들며, 채무의 총량에 대한 논의보다는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따라서 재정통계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관심과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Government 2.0을 선언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정보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재정정보의 생산, 수집, 관리에 관여하는 데에는 수많은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D-Brain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도 시스템에

사용할 Input이 부족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재정통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의 생산, 수집,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본 개편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관련된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이 국가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적인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정치가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는 실시간(real time) 재정정보를 제공하려고까지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의 국가 국채 포함 여부에 대해 All or Nothing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는 정부사업을 대항하면서 생기는 부채와 자체 사업과 관련된 부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부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구분회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주요 공기업은 국제기준에 의해서는 부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부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연금의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미리 계산하여 보여주는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총량이 아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형 국책사업, 국가부채에 반영돼야

정남기/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개편안의 목적은 국제비교와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채규모의 파악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공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성을 기준으로 한 원가보상률의 적용에 있어 All or Nothing의 방식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적어도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라고 하면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80% 정도 되는 기업들을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원가보상률이든 총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이든 일정한 수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립적인 제도단위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인데, 실제로 공기업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도단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대형 국책사업 추진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LH공사, 철도공사(KTX관련 사업 등), 수자원공사(4대강 문제 등) 등 공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문이 든다. 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기금과 관련된 충당부채, 책임준비금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토론자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으로 제외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산업은행이 증자를 하고 재출자를 통해 증자하는 경우 산업은행과 산하 공기업의 자본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사례와 국채인수를 목적으로 공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10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

는데, 국민연금이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순수하게 자산운용 차원에서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국채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면 통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경우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히 병기 및 부기하는 것에 더하여 두 가지 목적에 각각 부합하는 서로 다른 통계 제시가 필요하며 공기업 및 연금 부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OECD 기준은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총진료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과 관련된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는 현 개편안 이외의 보완지표 제공이 필요하다.

'관리대상 일반정부 부채' 개념도입 제안

황성현/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정책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지난 2006년 4월의 중앙일보와 기획예산처 간 재정규모 관련 논쟁은 오늘의 토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정부측 주장은 오늘 공청회의 발제자료와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에 맞게 공공기관을 시장성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공기업을 재정통계에서 제외자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 측의 주장은 시장

성 기준을 무시하고 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산업은행 등 웬만한 공기업을 다 정부로 분류해서 우리의 재정규모가 국제기준에 따른 미국, 일본의 재정 규모보다 크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의 기본 목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상대평가이다. 재정규모나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한 후 다른 나라와의 상대평가를 통해 재정정책 기초 설정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평가의 기본은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공기업을 다른 나라가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시장성 기준이 50%이면 우리도 50%로 설정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논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재정규모나 국가부채 규모와 관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된 것은 이러한 상대평가의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의 경우에 덩치가 큰 공기업들을 재정에 포함시킨 후, 공기업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 통계와 비교해서 우리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식의 우를 범해 왔다. 보통 공기업이 재정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GFS 체제에서 공기업은 정의상 재정기능(fiscal policy)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다. 다만 그 수행방식에 있어 정부와 달리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ESP)'을 받고 수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장성 기준을 적용해서 공기업들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번에 민관합동작업반에서 작업한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가 정부로 분류했던 규모가 큰 기업들은 거의 모두 공기업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며, 중앙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2006년 당시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성 기준에 따라 공기업들을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모델이 없는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재정규모나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여보이게 하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정부가 한편에서는 시장성 기준에 따라 공기업들을 재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때문에 공기업들을 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향은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번 개편작업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재정규모나 국가부채 규모의 시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치를 시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기준 설정상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도 덩치가 큰 공기업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재정규모나 국가부채 규모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초적 판단을 바꿀 만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규모는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동시에 있어서 순증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재정규모의 경우, 비영리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정부 출연금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금융성 기금의 경우 금융성 거래가 제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가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규모가 큰 건강보험이 포함되므로 규모 증가요인이 있는데,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건강보험료는 이미 국민부담물에 포함되어 있고, 국민부담물이 선진국보다 10%p 정도 낮으므로 역시 선진국과의 재정규모 격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수치를 계산해 본 후에 기준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재정통계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실제 쓰는 규모가 더 큰 지방재정의 통계체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통계체계 개편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통합재정수지통계에 지방재정부문을 포함하는 작업에서도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번 작업에 있어서도 일부 작업 일정이 늦어지는 등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로잡아야 일반정부 중심의 재정통계가 발전될 수 있다. 향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당국 중심의 일관된 관리체계 설정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유 국채를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정부로 분류하는 한 일종의 내부 거래를 제외하는 것으로 논란거리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수입이 정상적 세입이 되고, 이를 다른 회계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과 구분된다. 이는 마치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의 흑자가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재정수지를 이용해서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하고, 최근 재정정책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연금수입의 경우 미래에 연금지출로 써야 할 돈으로 일반적인 세금 수입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므로, 관리대상 재정수지와 같은 개념으로 국민연금 보유 국채를 포함하는 '관리대상 일반정부 부채' 지표의 사용을 제안한다. 국제비교에서는 일반정부 부채를 이용하고, 재정건전성 판단에는 관리대상 일반정부 부채를 이용하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는 것은 국제기준과 관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이것이 재정통계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연금의 수급구조 개혁은 재정통계와는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기업의 제외 문제도 그렇고, 재정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리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제기준에 따라 비

교가 가능한 통계를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을 구조조정기구로 봐서 정부로 분류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구조조정기가 지난 현재의 업무를 봐야 한다. 이들을 정부로 분류할 경우 법적인 정부보증채무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들 기구는 금융공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일괄적으로 정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도 국제기준에 맞게 시장성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개편안에 대체로 동의한다. 실제 수치를 계산한 후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기초적 판단이 달라질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상대평가'를 무시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 지방재정통계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 '관리대상 일반정부 부채'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공기업 등이 재정통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담당하게 한 것과 같은 분식 회계를 정부 스스로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KIPF**

공공정책포럼



■ 제13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 동아시아 협조, 동아시아 협조, 영인자 과거를 가진 국
- 일본 주권에서 영미국(하) 협조와 국가
- 정권변동에 영안정책을 바탕으로
- "다해로운 개발된 나라", "다 균형되고 공"
- "다 최후의 영안 정책"로 뒷받침
- ✓ 제2의 국은 공성 전기 도래
 - * "민중사의 영대 기억, 신세대 안에 정전국에 전입한 영국, 2,000
 - 새로운 세계질서로 재편되는 동북아시아의 시대
 - 감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
 - 역사... 영안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

제13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
- 일 시 2011년 1월 21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45 주제 발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1월 21일 서울 팔레스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3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KDI 초빙연구위원

정책의 선봉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강만수 위원장을 모시고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의 주제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다. 대내외 경제위기의 극복 및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여러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공공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격의 없는 토론을 부탁드린다.

주제발표 요약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

강만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최근 두 번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위기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위기의 본질은 “카지노 자본주의”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심화와 헛바퀴 금융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투기성 금융 거래는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통제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활성화 역시 카지노 자본주의의 대표적 예이며, 저축보다 차입에 의존하는 부채주의 역시 위기의 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소비 및 투자의 지연, 노동시장의 충격, 추가적 경기 부양여력 부재, 글로벌 불균형 등이 지속가능한 회복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역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정책이 논의되었으며, 과도한 자본이동 및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완화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리더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영리한 돌고래”임을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물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환율갈등 해소, 국제 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협력 액션플랜, 무역자유화 공감대 형성 등에 관한 G20 서울 컨센서스의 결과 역시 낙관적이다. 그러나 대외의존도 심화 등 아직 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글로벌 일류국가를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More Global & Open)를 지향해야 한다. 해외 M&A 시장에 참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및 외국인의 국내 활동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한 ‘G20 세대’의 글로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Fund + Knowledge」 형식의 한국형 ODA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More Balanced & Fair)를 만들어야 한다. 법의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기반 강화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셋째,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More Sustainable & Growing)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발굴, 선도적인 녹색성장 추진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인구 확대와 일하는 스타일 개선을 통해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 또한 방법일 것이다.

■ 자유 토론

김성진/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장

부채주의의 원인으로 인구는 증가(ever-growing population)하나 노동인구는 감소(ever-shrinking workforce)하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으면 한다.

강만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발표자)

출산을 저하는 세계적 추세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를 감안하여 출산장려정책 외에 해외 동포의 국내 활동·이주를 장려하는 이민 정책, 사내대학 등 취업 후에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수반한 경제활동 개시연령 하향 조정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여성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 사항과 정년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회복에 있어 에너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재정 적자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 에너지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만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발표자)

우선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작년에 폴 크루그먼은 칼럼을 통해 “신흥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정책 등 전략적인 접근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민근/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의 문제를 고민할 때 주로 제조업에서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 및 세계화의 추세로 볼 때 제조업 못지않게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강만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발표자)

수출 등 제조업 부문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였을 때,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회복이 필요

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 진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같이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역시 제고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재인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강 위원장은 경제위기 당시 대외 요인에 대응하는 환율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근거 및 자문을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강만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발표자)

평소 업무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축적하고, 필요할 시에는 직관적 판단을 활용한다. 이론적 견해가 종종 현실 경제와 시차를 가지기 때문에, 평소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도서관을 만들어 신문이나 외국 석학의 칼럼 등을 수집하고 이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반이 바탕이 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직관적 판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정수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넓은 시각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해 준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내부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및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될 것이다.

오는 2월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남일총 교수를 모시고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어 3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11-02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2010년 12월 29일에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 4차 개정 2010년 재정법(2010 Finance Act) 등을 승인함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서비스에 대하여 1%의 조세를 부과하는 온라인광고세(또는 구글세)를 도입함
- 중국 국세청은 2010년 12월 30일에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제1차 연차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 보고서는 APA의 착수건수, 적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폴란드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요 세법 개정 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인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회보장기여금 부과한도 인상 등이 있음

1-1.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2010년 12월 29일에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 4차 개정 2010년 재정법(2010 Finance Act) 등을 승인함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법령의 사전적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법령의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합헌 여부를 판결함
 - 재정법은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포될 수 있음
 - 승인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요약·정리함

가. 법인세 관련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따라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9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일반규정이 적용됨
- 차입금이 차입을 하는 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해서 보증되는 경우 특수한 관계가 없는 회사(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란 주주나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특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함

- 도입 배경: 실제적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인 LBO 방식의 기업 인수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LBO(Leverage Buy-Out):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 즉,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이를 인수대가로 지급할 경우 실제적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LBO 방식의 인수임
- 프랑스 과세당국은 실질투자 없는 인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한도를 제한함

- 자회사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교환받은 주식은 배당소득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의제됨
- 배당소득공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란 수입배당금의 9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주식을 최소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식을 2년간 보유하지 않아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연결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관련 자본이득의 경우 장기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장기 자본이득의 범위에 특허권과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개량권(improvements)을 포함시킴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용료(royalty)에 대한 손금부인 규정이 폐지됨
- 판매후리스로 리스한 건물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판매후리스: 리스자산을 처분한 후 그 리스자산을 리스하는 거래

나. 소득세 관련

- 2011년에 신고할 2010년 소득세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이 40%에서 41%로 1%p 인상됨

과세소득구간 (EURO)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0 ~ 5,963	0	0
5,963 ~ 11,896	5.5%	5.5%
11,896 ~ 26,420	14%	14%
26,420 ~ 70,830	30%	30%
70,830 초과	40%	41%

자료 :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portal/dgi/home?pageId=home&sfid=00>

- 주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2011년 1월 1일 이후 대출하는 대출금과 2011년 9월 30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정신적 피해(moral damage)에 대한 보상금이 1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11년



1월 1일 이후 18%에서 19%로 인상됨

-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배당금의 50%의 세액을 115유로(부부의 경우 230유로)에 달할 때까지 공제할 수 있음
- 시장성 있는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액자본이득 비과세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폐지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25,830유로 미만의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자본이득세율이 2011년 1월 1일 이후 18%에서 19%로 인상됨
 - 부동산의 자본이득세율도 2011년 1월 1일 이후 16%에서 19%로 인상됨
- 조세감면한도(Overall tax reduction limitation)가 축소됨: 18,000유로+과세소득의 6%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조세감면한도: 2011년 이후 20,000유로+과세소득의 8%
 - 조세감면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부담의 감소액의 총량에 대한 한도

다. 부가가치세 관련

- TV, 전화 및 인터넷 통합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인 19.6%를 적용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특정 통신서비스의 경우 경감세율인 5.5%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통합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명확하지 않았음

라. 은행세 도입

- 2011년부터 체계적 위험세(Systematic risk tax)로 알려진 은행세를 도입함
 - 이는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막기 위하여 시행되며 과세표준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며 0.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됨

1-2. 프랑스의 온라인광고세(구글세) 도입

-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서비스에 대하여 1%의 조세를 부과하는 온라인광고세(또는 구글세)를 도입함
 - 2010년 12월 29일에 구글세의 신설이 포함된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 등이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통과함
 - 온라인광고세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0년 초에 도입을 주창한 것으로, 사르코지는 구글 프랑스 지사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예산장관은 2010년 11월 15일 구글세의 시행을 2011년 7월 1일로 미룰 것이라고 밝힘
- 온라인광고세: 프랑스에 근거를 둔 회사(france-based company)가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의 1%를 온라인 광고사업자에게 과세함
 - 세수는 5천만유로로 예상되며 이중 4,500만유로가 구글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월 6일에 문화부 장관은 예술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기반 사업을 지원하여 관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온라인광고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2. 중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 중국 국세청은 2010년 12월 30일에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제1차 연차보고서를 출간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제1차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착수했던 건수를 아래에 <표 1>처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1998년 4월에 도입함

<표 1> 연도별 APA 착수건수

(단위: 건)

연도	쌍방향 APA	일방적 APA	소계
2009년	7	5	12
2008년	1	6	7
2005~2007년	4	30	34
소계	12	41	53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대상으로는 무형자산의 구입·판매거래가 62%,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사용거래가 19%, 서비스규정이 19%를 차지하고 있음
- 서명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사용된 이전가격방법으로는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TNMM)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높은 비교가능성이 요구되고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과 이익분할법(Profit-Split Method)은 적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된 예가 많지 않음
- 서명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적용된 이전가격 방법은 35건이 순거래이익률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TNMM), 15건이 원가가산법(Cost-Plus Method)이고 4건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이며, 2건이 이익분할법(Profit-Split Method, PS), 2건이 기타의 방법을 적용함
- APA에 소요된 기간은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가 쌍방향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비하여 단기간이 소요되었고, 대부분 2년 이내에 절차가 종결됨
- 쌍방향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58%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쌍방향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25%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는 전부 2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내용 중 적용기준, 진행절차, 소급적용, 갱신 및 종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 ① 특수관계자와의 연간거래금액이 40백만위안을 초과(약 605만달러)하여야 하고, ②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고된 상태이어야 하며



- ③ 관련규정에 의한 문서가 준비·유지·제출되어야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는 사전미팅(prefiling meeting), 공식적인 적용(formal application), 조사와 평가(examination and evaluation), 협상(negotiation), 협약과 서명(agreement and signing), 집행과 감독(execution and monitoring)의 단계를 거침
- 중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촉진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조사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미팅을 중요시함
- 중국 과세당국이 검토하고 협상하는데, 쌍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경우 24개월,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적용하는 기업은 과세당국이 승인한 APA의 이전가격방법과 계산에 대하여 APA 승인연도부터 10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해 갱신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추어 일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는 사전에 결정된 만기일의 도래 등의 사유로 종결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갱신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만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과세당국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기간 동안에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가 종결되는 사유는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만기일이 되는 경우,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③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결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상당히 변경되거나 납세자의 사업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임

3. 폴란드 일부 세법개정 사항

- 폴란드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관련 일부 내용이 개정됨

가.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인상

- 부가가치세 등록 및 과세면제 기준을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PLN100,000에서 PLN150,000으로 인상함¹⁾
-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PLN1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의무가 면제됨
- 당해연도에 사업활동을 개시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활동을 수행한 월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조정함
- 2010년 연간 매출액이 PLN100,000에서 PLN150,000 사이의 과세사업자인 경우 2011년 1월 15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폴란드 화폐단위는 즐러티(표기는 PLN으로 함)이며, 2011년 1월 24일 최초 고시기준 PLN 150,000은 59,082,000원에 해당함

나.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invoices) 발행 허용

- 사업자는 요건 충족시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동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관할 의무, 진실성 확보 등이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안심 서명(secure signature)은 요구되지 않음

다. 사회보장기여금 부과한도 인상

- 고령연금(old-age pension) 및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에 대한 최대 과세표준(maximum base) 금액을 인상함
 - 고령연금 및 상해보험의 경우 최대 과세표준 금액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 상해보험료와 근로자 부담 질병 및 출산보험료만이 부과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부터 고령연금 및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최대 과세표준 금액을 연간 현행 PLN94,380에서 PLN100,770으로 인상함
 - 이는 월평균 급여 예측치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동향 11-03

요약

- 네덜란드 조세당국은 2011년 1월 15일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자본배부'의 자본배부 방법을 규정하는 시행규칙(Decree No. 2010/457M)을 발표함
- 캐나다 재무부는 2010년 12월 16일 면세혜택을 받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신탁회사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동 요건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하게 함
- 중국 국세청은 2010년 12월 13일에 행정규칙(Notice 26)을 발표하여 2008년 소득세법 통일시 불명확하였던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venture capital investment enterprise, FIVCIEs)에 대한 세무상 지위를 도관체로 취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

1. 네덜란드 고정사업장의 자본배부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 네덜란드 조세당국은 2011년 1월 15일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자본배부에 관한 시행규칙(Decree No. 2010/457M)을 발표함
 - 고정사업장의 자본배부 : 지점(고정사업장)의 경우 차입금의 과도한 조달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



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상 적정한 가상의 자본금 수준을 배부함

-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 : 고정사업장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이용하기 위하여 과도한 차입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음

■ 시행규칙(Decree No. 2010/457M)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본배부는 자본할당 접근법(capital allocation approach)에 의하여 배부함

- 자본할당 접근법 :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에 의하여 특정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자산(assets owned)과 부채(risk assumed)를 통해 가상의 자본을 동 고정사업장에 배부하는 방법

- 다만, 회사가 자본조달을 공정가치기준(arm's length basis)에 의해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자본접근법(thin capitalization approach)에 의해서 배부함

- 과소자본접근법이란 차입금을 기준으로 특정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액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법

■ 고정사업장에 배부된 자본이 배당소득공제(participation exemption)와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 regime)상 주식(share)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정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특정요건 : ① 외국회사가 고정사업장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② 고정사업

장의 사업활동이 적격한 종업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③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과 고정사업장에 주식이 귀속되는 회사의 사업활동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2. 캐나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2010년 12월 16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관한 소득세법(Income Tax Act) 개정안을 발표

■ 캐나다에서는 신탁회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나, 신탁회사 중 부동산임대 등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않음

- 신탁회사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비적격자산¹⁾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둘째, 한 과세연도 동안 수입의 95% 이상이 적격출처(qualified source)²⁾에서 발생하여야 함
- 셋째, 한 과세연도 동안 수입의 75% 이상이 특정출처³⁾에서 발생하여야 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적격요건

1) 적격자산은 부동산(real or immovable properties)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관련 회사 등에 대한 유가증권(securities)을 말함

2) 여기서 적격출처라 함은 다음의 5가지를 의미함. ①부동산 자산의 임대수입(rent from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②이자(interest), ③부동산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 from dispositions of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④배당(dividends), ⑤로열티(royalties)

3) 여기서 특정출처라 함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말함. ①부동산 자산의 임대수입(rent from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②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또는 저당권에 대한 이자(interest from mortgages, or hypothecs on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③부동산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 from dispositions of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들을 완화하고, 적격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적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비적격자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비적격자산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의 95% 이상이 적격출처에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총수입의 90% 이상이 적격출처(unqualified source)에서 발생하도록 규정함

-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는 부동산투자 활동에 있어서 임대목적 외에도 재판매 등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적격요건상 수입(revenue)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함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정의규정에서 사용되는 수입(revenue)은 총소득을 의미하며, 자본이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명확히 함

3. 중국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의 세무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행정규칙(Notice 26) 발표

- 중국 국세청은 2010년 12월 13일에 행정규칙(Notice 26)을 발표하여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venture capital investment enterprise, FIVCIEs)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명확하게 함

- 동 행정규칙(Notice 26)을 통해 기존의 규정(2003년 Notice 61)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도관으로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존의 규정(2003년 Notice 61)에 의하여 도관으로 취급되었던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2008년 통일된 소득세법하에서는 세무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가 불확실하였음

- 기존의 규정(2003년 Notice 61)하에서는 법인이 아닌 조인트벤처로 구성된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을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도관체로 처리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자의 지분별로 과세함

- 2008년 소득세법을 통일했을 때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을 세무상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확실하게 됨

- 통일된 소득세법은 법인이 아닌 조인트벤처를 도관체로 허용하는 (구)외국소득세법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 그래서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의 세무상 처리가 불확실해짐

- 기존규정(2003년 Notice 61)을 적용할 수 없다면,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얻은 수익과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분배하는 배당이 각각 과세대상이 됨

-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을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에 비하여 외국투자자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됨

-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존규정(2003년 Notice 61)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규정임

- 기존규정(2003년 Notice 61)은 외국투자자는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개별펀드매니저에게



그들의 투자활동을 모두 위임하는 경우에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됨

- 이 경우에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 원천징수세만 발생함
- 적용가능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10%보다 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정책 흐름



-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2010년 국세징수 실적
-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출범
- 한-인도 CEPA 발효 후 1년의 성과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본 자료는 2011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서 발표한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 10(목) 15: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박성득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 지난해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 · 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이 261.2조원, 총세출이 248.7조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2.5조원 중 4.7조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총 7.8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의 세입은 205.2조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201.3조원 대비 3.9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2.8조원* 대비 97.2%인 197.1조원임

* 예산현액(202.8조원)=예산액(201.3조원)+전년도 이월액(1.5조원) 등
 - 특별회계의 세입은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54.1조원 대비 1.9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6.2조원* 대비 91.7%인 51.5조원임

* 예산현액(56.2조원)=예산액(54.1조원)+전년도 이월액(1.2조원)+초과지출승인액(0.3조원)+예비비 지출결정액(0.6조원)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7.8조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8조원이 발생하였으며,

-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정부는 총세입 · 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 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I.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개요

1.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총괄

- '10회계연도 총세입은 261.2조원(예산 대비 2.3% 초과징수), 총세출은 248.7조원(예산현액 대비 96.0% 집행)
- 다음연도 이월액 4.7조원을 고려시 세계잉여금은 약 7.8조원(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1.8조원)

회계별 세입 · 세출 집행실적

(단위: 조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C=A-B)	이월액(D)	세계잉여금(C-D)
합계	261.2	248.7	12.5	4.7	7.8
일반회계	205.2	197.1	8.1	2.1	6.0
특별회계	56.0	51.6	4.4	2.6	1.8

* 총세입부 · 총세출부와 한국은행 국고금 대차대조표 대조 결과 금액이 일치

② 세입

1. 일반회계

- 예산액 201.3조원 대비 3.9조원(2.0%) 초과 징수
 - **(국세수입)** 7.4조원 증가, 10년 경기호전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전망 5.0% → 잠정실적 6.1%) 및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기인
 - * 부가세+2.1조원,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2.5조원, 관세+1.4조원 등
 - **(세외수입)** 3.5조원 감소, 세입증가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축소 등에 기인
 - * 전년도 이월금+2.8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0조원 등

일반회계 세입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예산(A)	실적(B)	증감(B-A)	증감률(%)
합계	2,012,834	2,052,235	39,401	2.0
일반회계	1,634,923	1,709,387	74,464	4.6
특별회계	377,911	342,848	△35,063	△9.3

2. 특별회계

- 예산액(54.1조원) 대비 3.6%(1.9조원) 초과 징수
 - 총 18개 특별회계 중 10개의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1.6조원) : 예금수신고 증가 및 자금운용수익률 증가로 금융사업 수익증가 등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0.5조원) : LNG 등 수입 증가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및 용자원금 조기상환 증가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0.7조원) : 인천공항공사 매각 지연 등에 기인

특별회계 세입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예산(A)	실적(B)	증감(B-A)	증감률(%)
합계	540,509	559,958	19,449	3.6
기타특별(13개)	460,997	463,906	2,909	0.6
기업특별(5개)	79,512	96,052	16,540	20.8

③ 세출

1. 일반회계

- 예산현액* 202.8조원 대비 97.2%인 197.1조원 지출
 - * 예산액(201.3조원)+전년도이월액(1.5조원) 등
- 2010년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행
 - **(기능별)** 일반행정 > 교육 > 국방 > 사회복지 순으로 지출
 - **(성질별)** 이전지출 > 전출금 > 인건비 순으로 지출

기능별 지출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계	일반행정	교육	국방
지출액	1,971,371	432,034	374,204	292,477
구성비	100.0	21.9	19.0	14.8
구분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공공질서및안전	기타
지출액	224,863	149,813	119,378	378,602
구성비	11.4	7.6	6.1	19.2

2. 특별회계

- 예산현액* 56.2조원 대비 91.7%인 51.5조원 지출
 - * 예산액(54.1조원)+전년도이월액(1.2조원)+초과지출승인액(0.3조원)+예비비지출결정액(0.6조원)
- **(기타특별회계)** 인천공항공사 매각 지연에 따른 세수(교특회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인

43.6조원 지출

- **(기업특별회계)** 산지 쌀값 및 국제곡물가 하락에 따른 양곡매입 비용 감소(양특회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인 7.9조원 지출

특별회계 지출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실적(B)	집행률(B/A)
합계	540,509	561,623	515,163	91.7
기타특별(13개)	460,997	477,223	436,281	91.4
기업특별(5개)	79,512	84,400	78,882	93.5

4 이월·불용액

■ 이월액은 총 4.7조원

- **(일반회계)** 2.1 조원 : 공기 부족, 사업집행 지연 및 방위비분담금 등에 기인

(단위: 억원)

합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기타
21,350	7,554 ¹⁾	5,405 ²⁾	4,240 ³⁾	4,151

- 1) 군사시설공사 공기 부족, 방위비분담금 등
- 2) 공기 부족 및 해외구매 협상 지연 등
- 3) 4대강 사업집행 지연

- **(특별회계)** 2.6조원, 사업집행 지연 및 자금 부족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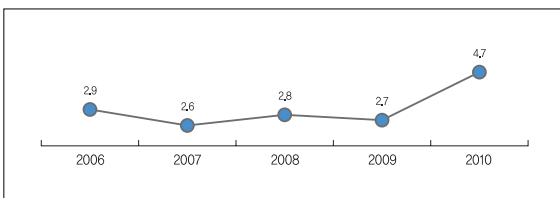
(단위: 억원)

합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기타
26,273	8,447 ¹⁾	8,026 ²⁾	2,501	7,299

- 1) 살처분 보상금, 연말 자금 부족으로 인한 집행 지연 등
- 2) 연말 자금 부족으로 인한 집행 지연 등

연도별 이월액 발생추이

(단위: 조원)



■ 불용액은 총 5.5조원

- **(일반회계)** 3.5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자 감소 등에 기인

(단위: 억원)

합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타
35,156	13,475 ¹⁾	5,001 ²⁾	3,534 ³⁾	2,606	10,540

- 1) 예비비 미사용 및 공자기금 상환이자 감소 등
- 2) 한국장학재단 미출연 등
- 3) 남북협력기금 미출연

- **(특별회계)** 2.0조원, 세수 부족 및 지급사유 미발 생등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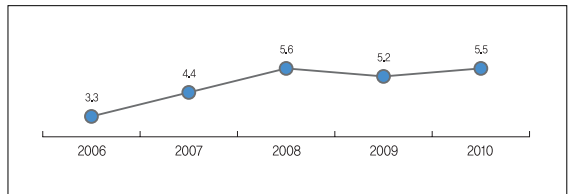
(단위: 억원)

합계	교통시설	양곡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우편사업	기타
20,188	8,892 ¹⁾	1,1915 ²⁾	1,910	1,650	5,821

- 1) 세수부족 등
- 2) 산지 쌀값 및 국제 곡물가 하락에 따른 양곡 매입비용 감소 등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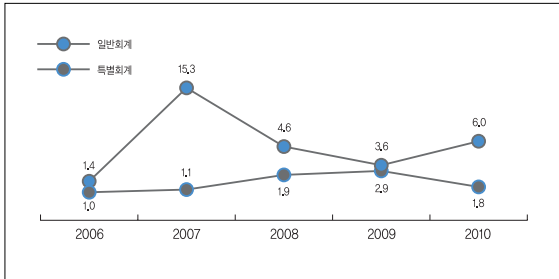
5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총 7.8 조원으로 전년(6.5 조원)보다 1.3조원 증가

- 일반회계 6.0조원(09년 3.6조원), 특별회계 1.8조원(09년 2.9 조원)
-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 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불용 등에 기인

연도별 세계 발생추이

(단위: 조원)



세계잉여금의 처리(국가재정법 제90조)

- 1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39.51%)
- 2 공적 자금우선 출연 (1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 3 채무상환 (1+2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다음 연도 세입 조치 등

II. 향후 결산 일정

1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기초로 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대통령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반영, 5. 31일까지 국회로 제출

국가결산 일정(계획)

2월 말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3월중순 ~ 4. 10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4. 10 ~ 5. 20	감사원결산검사(국가재정법 §59, §60)
5. 31	국회제출(국가재정법 §61)

2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수립

- 세계잉여금은 1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얻은 이후 국가재정법상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방안 확정

2010년 국세징수 실적

* 본 자료는 2011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10년 국세징수 실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년 국세수입 : 177조 7,184억원
- ['09년 실적(164조 5,407억원) 대비] 13.2조원 증가(8.0% ↑)
- ['10년 예산(170조 4,575억원) 대비] 7.2조원 초과(4.3% ↑)
 - ⇒ 선제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기인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09실적	'10년		'09 실적 대비		'10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164.5	170.5	177.7	13.2	(8.0)	7.2	(4.3)
• 소득세	34.4	37.2	37.5	3.1	(8.8)	0.3	(0.6)
• 법인세	35.3	36.9	37.3	2.0	(5.7)	0.4	(1.1)
• 상속증여세	2.4	2.7	3.1	0.7	(26.6)	0.4	(13.9)
• 부가가치세	47.0	47.0	49.1	2.1	(4.5)	2.1	(4.6)
• 관세	9.2	9.3	10.1	1.5	(16.3)	1.4	(15.0)

- '09년 실적 대비 주요 증감요인
- (증가세목)
 - 소득세(+3.1조원) : 자영업자 소득 및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
 - 법인세(+2.0조원) :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 부활 등

- 부가가치세(+2.1조원) : 경기 호조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
- (감소세목)
 - 과년도수입(△2.5조원) : 경기회복으로 납세유예 감소
 - 종합부동산세(△0.2조원) : '09년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세제개편에 따라 '10년으로 이월된 분납분 고지세액 감소

■ '10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

- (증가세목)
 - 부가가치세(+2.1조원) :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증가
 - * 실질 경제성장률 : (전망) 5.0% → (잠정 실적) 6.1%
 - 개별소비세 · 교통세(+2.5조원) : 경기회복으로 LNG · 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 및 자동차 판매량이 전망치보다 증가
 - 관세(+1.4조원) : 수입액이 전망* 보다 증가
 - * 수입액(억달러) : (전망) 3,897 → (실적) 4,252
- (감소세목)
 - 인지세(△0.1조원) :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1. 2010년 세입 개관

- 2010년 총국세 규모는 177조 7,184억원으로,

- 2009년 국세실적(164조 5,407억원) 대비 8.0%(13조 1,777억원) 증가

(단위 조원, %)

구분	'09년 실적	'10년		'09년 실적 대비		'10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국세	164.5	170.5	177.7	13.2	(8.0)	7.2	(4.3)
일반회계	157.9	163.5	170.9	13.0	(8.2)	7.4	(4.6)
특별회계	6.6	7.0	6.8	0.2	(2.5)	△0.2	(△2.7)

1 회계별 증감 사유

- **(일반회계)** 170.9조원으로 2009년 실적(157.9조원) 대비 8.2% (13.0조원 ↑) 증가
 - 임금상승·자영업자 소득증가로 소득세(3.1조원 ↑),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법인세(2.0조원 ↑),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2.1조원 ↑) 등 증가
 - 반면, 경기회복으로 납세유예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과년도수입(△2.5조원 ↓) 감소
- **(특별회계)** 특별회계인 주세·농어촌특별세는 각각 2.9조원, 3.9조원으로서 2009년 실적 대비 2.5%(0.2조원 ↑) 증가

2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 (전년 대비)

- **(일반회계)** 170.9조원으로 2009년 실적(157.9조원) 대비 8.2% (13.0조원 ↑) 증가

1. 증가 세목

① 소득세 : 3.1조원 증가

- 경기회복으로 명목임금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득증가 등에 기인
 - * 명목임금상승률(%) : (09년) △0.7 → (10년) <1/4분기> 6.0 <2/4> 6.2 <3/4> 7.8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세표준(조원) : (09년) 64.7 → (10년)

66.7 <2.0조원 ↑>

- * 취업자 수(천명) : (09년) 23,506 → (10년) 23,829 <323천명 ↑, 1.4% ↑>
- * 상시(상용+임시)근로자 수(천명) : (09년) 14,491 → (10년) 15,154 <4.6% ↑>

② 법인세 : 2.0조원 증가

- 서울인하로 신고분 징수액은 감소하였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부활 등으로 원천징수분이 증가한 데 기인
 - * 법인세 신고분(조원) : (09년) 30.6 → (10년) 28.2 <△2.4조원 ↓>
 - * 법인세 원천분(조원) : (09년) 4.7 → (10년) 9.1 <+4.4조원 ↑>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08년귀속) 25% → (09년귀속) 22%

③ 부가가치세 : 2.1조원 증가

-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으로 이양(2.7조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조에 따라 민간소비 및 수입액이 증가한 데 기인
 - * 민간소비증가율 : (09년) 0.2% → (10년) 4.1%
 - * 수입액(억불) : (09년) 3,231 → (10년) 4,252 <31.6% ↑>

④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5.3조원

- 경기회복으로 LNG·휘발유 등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데 기인
 - * LNG 판매량(천톤) : (09년) 23,855 → (10년) 30,759 <28.9% ↑>
 - * 휘발유 판매량(천ℓ) : (09년) 10,512 → (10년) 10,922 <3.9% ↑>
 - * 자동차 판매량(천대) : (09년) 1,126 → (10년) 1,238 <9.9% ↑>

⑤ 관세 : 1.5조원

- 경기호조로 수입액이 대폭 증가한 데 기인
 - * 수입액(억불) : (09년) 3,231 → (10년) 4,252 <31.6% ↑>

2. 감소 세목

① 과년도수입 : △2.5조원 감소

- 경기회복으로 납세유예액 감소

* '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납기연장 금액(부가가치세 등 2.4조원)이 '09년에 과년도수입으로 징수됨

② 종합부동산세 : △0.2조원 감소

- '09년 종합부동산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고지금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10년으로 납부기한(2. 15일)이 이월된 분납분 고지세액 등이 감소한 데 기인

* 분납분 고지세액(억원) : (09년) 3,494→(10년) 2,217

2.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09년 실적	2010년		'09 실적대비		'10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64.5	170.5	177.7	13.2	(8.0)	7.2	(4.3)
• 소 득 세	34.4	37.2	37.5	3.1	(8.8)	0.3	(0.6)
• 법 인 세	35.3	36.9	37.3	2.0	(5.7)	0.4	(1.1)
• 상속증여세	2.4	2.7	3.1	0.7	(26.6)	0.4	(13.9)
• 부가가치세	47.0	47.0	49.1	2.1	(4.5)	2.1	(4.6)
• 개별소비세	3.6	4.8	5.1	1.5	(39.1)	0.3	(6.0)
• 증권거래세	3.5	3.7	3.7	0.2	(3.8)	0.0	(△0.7)
• 인 지 세	0.5	0.6	0.5	0.0	(△4.0)	△0.1	(△12.5)
• 과년도수입	6.9	4.1	4.4	△2.5	(△35.5)	0.3	(8.1)
• 교 통 세	10.1	11.7	13.9	3.8	(38.4)	2.2	(19.5)
• 관 세	9.2	9.3	10.7	1.5	(16.3)	1.4	(15.0)
• 교 육 세	3.8	4.5	4.6	0.8	(23.7)	0.1	(2.3)
• 종합부동산세	1.2	1.0	1.0	△0.2	(△14.8)	0.0	(△1.6)
• 주 세	2.8	2.9	2.9	0.1	(3.9)	0.0	(0.6)
• 농 특 세	3.8	4.1	3.9	0.1	(1.6)	△0.2	(△4.9)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정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 본 자료는 2011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 화되면서,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 그 연장선상에서 당정협의(2. 11)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1 전월세시장 동향

- 전셋값이 작년 12월에 수도권·서울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 금년 들어 연례적인 학군·학원수요와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른 봄 이사수요 조기화 등으로 예년보다 높게 상승

전셋값 증감률(%)

구 분	'06	'07	'08	'09	'10	'10.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
전 국	6.5	2.6	1.7	3.4	7.1	0.4	0.3	0.4	0.6	0.8	1.0	0.7	0.9
수도권	10.4	3.7	1.7	4.2	6.3	0.2	0.1	0.3	0.7	1.0	1.0	0.6	0.8
서울	9.8	3.7	1.1	6.0	6.4	0.2	0.1	0.3	0.7	0.9	0.8	0.6	1.0
지방광역시	2.5	0.9	1.0	2.9	9.2	0.6	0.5	0.6	0.5	0.8	1.1	1.1	1.0

- 수도권에서는 '08년 대규모 입주로 전셋값이 급락했던 강남 3구와 인근지역(광진·분당·용인)의 상승폭이 큼
 - 반면, 작년 신규입주가 많았던 강북, 파주, 일산 등은 안정
- 지방은 수년간 물가수준 이하의 안정 상태를 지속하다가 '10년 초부터 상승세
 - 교통 및 생활여건 개선 호재가 있는 대전·부산 등은 높게 상승한 반면, 광주·강원·경북 등은 비교적 안정

'10년중 전셋값 상승률(%)

승과	광진	분당	용인	강북	파주	일산	부산	대전	광주	강원	경북
10.3	10.0	11.4	9.6	2.8	0.0	△1.8	13.7	15.0	1.6	3.8	1.4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는 20~30평 형태(중소형)가 높게 상승
 - * (유형별) 아파트 8.8%, 단독 3.1 / (규모별) 대형 5.4%, 중형 8.1, 소형 7.3

- 월세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전세보다 낮은 상승률 지속중
 - 수도권 월세가격 상승률(%) : ('10. 10)0.8 → (11)0.4 → (12)0.2 → ('11. 1)0.2

2 평가 및 전망

■ 최근 전셋값 상승은 집값 안정으로 매매 잠재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대기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

• '08년 신규입주 증가*, 금융위기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하락(서울△1.8%, 송파△10.5)하여 재계약자들의 체감상승률이 높음

* 강남3구 아파트 입주 : ('07)1.1만호 → ('08)2.5 → ('09)0.6 → ('10)0.2

• 저금리 지속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 공급물량이 감소

* 서울 임대차계약 중 전세비중 : ('08. 9) 63% → ('10. 12) 61%

• 지방의 경우 중소형 신규 주택공급 부족, 일부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등에 따라 전셋값이 상승

■ 전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 다만, 최근 매매거래가 다소 회복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수도 있음

*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나, 전체 입주물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주택·아파트 입주물량 추정(단위 : 만호)

(단위 : 만호)

구 분	전세주택		아파트	
	'10년	'11년	'10년	'11년
전 국	34.7	32.4	25.9	20.6
수도권	18.7	17.7	14.2	11.9
서울	4.2	4.8	2.6	2.6
지방	16.0	14.7	11.8	8.7

3 대응방안

◇ 1. 13 전월세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

◇ 세입자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1. 1. 13 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실행

① 공공부문의 중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13만호)

• 중소형 분양·임대주택(9,7만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전체지구 입주 조기화 계획도 2월중 마련

- 1월에는 9,430호(계획 대비 118%, 수도권 5,747호)를 입주조치하였고, 2~3월에도 10,079호(계획 대비 113%, 수도권 4,623호) 입주

• 판교 순환용주택(1,300호)은 2. 11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3월부터 입주 개시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전국 2.6만호, 수도권 1.3만호)중 1.9만호*는 2. 14일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3월부터 입주

* 기 매입주택 0.6만호, 전세임대주택 1.3만호

- 신규 매입주택 0.7만호는 2. 10일부터 매입공고 실시

• 공공의 준공 후 미분양(2,500호)은 전월세주택으로 공급중이며,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 추진

② 단기간 내 공급가능한 민간의 중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 저리(2%)의 중소형주택 건설자금 특별지원(2. 10)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 → 300세대) 등 규제완화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2월국회에서 통과 추진

③ 주택자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1. 20)하여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저소득 세입자 지원
- 금년 지원규모도 6.8조원(당초 5.7조)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확대
 - * 지원실적(조원) : ('08) 4.2 → ('09) 4.7 → ('10) 4.8 → ('11.1) 0.2

④ 전월세 시장 관련 정보제공 강화

- 1분기 입주예정 정보는 1. 21일 기공개*하였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2. 26일부터 인터넷(온나라 포털)에 공개
 - * 매월 말 향후 3개월 입주정보(시기·지역·단지·규모별 세대수 등) 공개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시기 분산
 - * 시·도지사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2월국회에서 통과 추진
- 허위매물 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 * 1차로 1.26~27일 단속을 실시했고, 월 1회 이상 단속 예정

⑤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보금자리·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2월말)
- 분양가상한제 폐지(2월국회 개정 추진), 인허가 기간 단축 (6월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

2.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

가. 세입자 부담 완화

- ① 주택자금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2. 17)
-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지원한도) 호당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연 4.5% → 4.0%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대상)
 - (지원대상 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 1억원 이하

-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금년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작년(5.8조)보다 확대된 7조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

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①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증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
 - *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3월)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계획

구분	호수		기간		면적		취득가액		지역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서울	5호		10년		85㎡ 이하		3억원 이하		(양도세)	수도권내
경기 인천	3호		7년	5년	85㎡ 이하	149㎡ 이하	6억원 이하		동일 시·군 (종부세) 동일 시·도	
지방	1호	좌동	7년		149㎡ 이하		3억원 이하	좌동	지역 제한없음	좌동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

- 공모형 리츠 등이 투자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 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설)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세율 5%, 1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세율 14%

-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시 취득세 감면도 확대(현행30% → 최대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②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 촉진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특법, 지특법 개정)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건·내용

구분	감면내용
대상주택	개정법을 시행일 당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대상자	①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
감면율	• (취득세) 취득시 최대 50% 감면(법을 감면 25%, 조례감면 최대 25%) *조례감면의 경우 미분양주택의 가격·면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 • (양도세) 취득 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임대개시 시한	'11. 12. 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은 당초대로 4. 30일 종료

③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 주택기금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2. 17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 (지원한도) 호당 5,500만~7,500만원 → 7,000만~9,000만원 이하
- (지원금리) 연 3~4% → 2%
- 민간 임대주택도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 완화(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상한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 → 100%」로 완화

-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30㎡ → 50㎡ 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유도(2. 17)

다.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①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 확보

-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

* '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 80만호 공급시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09년 4.8% → '18년 12%, OECD 11.5%)

②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

-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현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 등을 감안,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3월)

4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① 세입자 부담 완화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기금운용계획 변경	'11. 2	국토부
②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조건 개선	소득·종부·법인세 시행령 개정	'11. 3	재정부
•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 투자시 세제 지원 확대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11. 4	재정부 행안부
•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11. 4	재정부 행안부
• 5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1. 2	국토부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비중 확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11. 2	국토부
• 원룸형 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1. 2	국토부
③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공급		지속	국토부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	도정법 시행령, 고시 개정	'11. 3	국토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 본 자료는 2011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1. 24(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동 지침을 통해 인건비, 경비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

- 특히 금년에는 감사원 권고 및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정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예산집행지침의 세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감사원 권고 및 국감 지적사항 등 보완

- (경평성과급) 평가 대상연도(전년도)의 실근무자에 게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경평성과급을 지급토록 함

* 퇴직자의 경우 평가대상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경평성과급을 지급하되, 입사연도에 경평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평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도록 함

- (국외항공운임) 기관장 국외공무 출장시, 항공 좌석등급을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 석으로 이용할 것을 명시

-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한) 통신비 일괄지원 금지,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의 최소 제작·지원
-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②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정부지침 개정 사항 반영

- '12년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자산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 하도록 규정 신설
-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
-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계획서에서 정해진 대로 경평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토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됨

참고 신·구 대비 주요 내용

분야	2010년도	2011년도
① 일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조기집행 적극 추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예산 집행 투명성·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②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평성과급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평가대상연도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연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연도에 지급 금지 - 향후 입사하는 임직원은 입사연도가 아닌 퇴직연도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총인건비 인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은 자율 경영계획서에 별도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 성과급 집행
③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국외항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직 공무원(차관)에 준하여 비즈니스석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취득시 디지털TV 우선 구매
④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조사 후 집행
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 회계사무규칙 중 예산집행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전용 및 이월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출범

* 본 자료는 2011년 2월 8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T/F 준비단에서 발표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출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IT산업 발전, 금융거래기법 혁신, 국제 거래증가 등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하였음

◇ 센터에서는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

* FAC : Forensic & Anti Tax-evasion Center

① 추진배경

-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IT산업의 발전,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거래기법의 혁신, 국제거래의 비약적 증가 등에 따라 탈세수법도 빠르게 고도화·지능화·광역화 추세
-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 탈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음에도 고의적·지능적 첨단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
-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탈세 수법의 조기 발굴·대응 및 첨단 세무조사기법 개발이 필요

② 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

1. 센터 구성

-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
- 수도권센터를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수도권지역 관할)하고,
-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에 지방조직 운영

2. 주요 기능

-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
-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假裝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관리 강화
 - * 선물·스왑·옵션·장기보험 등을 적극적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
-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
-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

*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로 다수의 공동 구매자를 모아 특정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

-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

■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Forensic*)

-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加筆·덧칠문자의 위·변조 여부,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의 동일성 등 판독·감정
-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분석

* Forensic : 과세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하는 것

■ 전산조사기법 개발

- ERP시스템 운용기업에 대한 DB 분석기법 개발
-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

③ 운영방향

-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
-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자, CFP(국제 공인재무설계사) 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하여 분석·조사역량을 고도화

④ 기대효과

- 첨단 금융거래기법, 사이버 거래, 전산자료·수동 문서 위·변조 등을 활용한 세금탈루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 경제상황 변동 또는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탈세유형을 수시 파악하여 한정된 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 업종별·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 및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하여 유사업종을 영

위하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함으로써 파급효과 극대화

-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확인 등 조사현장의 급증하는 포렌식 조사 수요를 뒷받침

한-인도 CEPA 발효 후 1년의 성과

* 본 자료는 2011년 1월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센터에서 발표한 「한-인도 CEPA 발효 후 1년의 성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CEPA 발효 후 교역변화

- 발효 1년 만에 수출 114억불, 수입 57억불, 무역수지 58억불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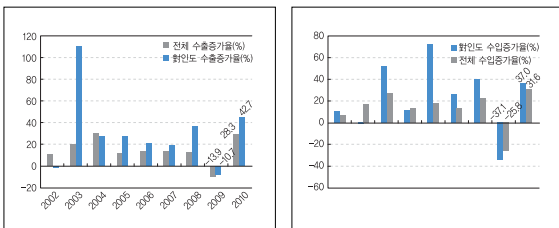
(단위: 억불, %)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9 (CEPA발효前)	80	41	39
2010 (CEPA발효後)	114 (42.7)	57 (37.0)	58 (48.8)

* ()는 발효 전 대비 증가율(%)

2. CEPA 발효 후 교역 증가폭 확대

- CEPA 발효 후, 對인도 수출입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 보다 높음



3. 성질별 무역 변화

- (소비재) : 수출입 증가율 5~6% 수준, 무역수지 큰 폭(21%) 증가

- (원자재) : 수출(40%), 수입(42%) 큰 폭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 10% 증가
- (자본재) : 수출 급증(49%)이 무역수지의 큰 폭(51%) 확대 견인

4. 상위 10대 교역 품목 (HS 4단위)

- (수출) : 자동차부속품(12%), 전화기(6%), 선박(6%) 등
- (수입) : 석유제품(54%), 면사(6%), 페로알로이(4%) 등

참고 1 신·구 대비 주요 내용

- [총괄] 최근 10년간 수출 8배 · 수입 5배 · 무역수지 19배 증가

최근 10년간 한-인도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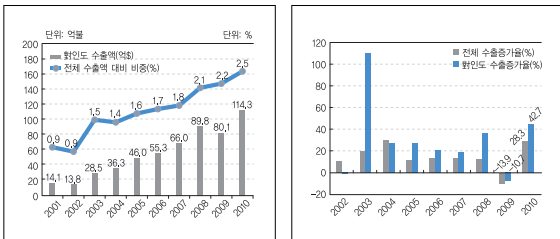
(단위: 억불, %)

	전체(對세계)			對인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9	3,635	3,231	404	80	41	39
(CEPA발효前)				(2.2)	(1.3)	
2010	4,664	4,252	412	114	57	58
(CEPA발효後)				(2.5)	(1.3)	

* ()는 전체(對세계) 내 인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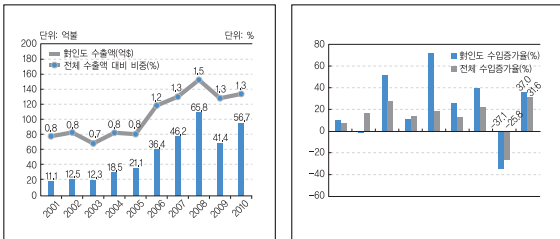
- (수출) 최근 10년간 100억불 증가, 전체 수출신장률 보다 빠른 성장세
 - 對인도 수출은 '01년 14억불 규모에서 '10년 114억불을 기록, 100억불 증가 (712% ↑)
 - 동기간 전체 수출은 '01년 1,504억불에서 '10년 4,664억불로 3,159억불 증가 (210% ↑)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변화



- (수입) 수입 46억불 증가,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빠름 (2.1배)
 - 對인도 수입은 '01년 11억불 규모에서 '10년 57억불 규모로 약 46억불 증가 (413% ↑)
 - 동기간 전체 수입은 '01년 1,411억불에서 '10년 4,252억불로 2,841억불 증가 (201% ↑)

수입 비중 및 증가율 변화



- (무역수지) 10년 전보다 55억불 증가, 19배 규모로 확대
 - '01년 3억불 규모에서 '10년 58억불 규모로 약 55억불(1,807%)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체 무역수지는 '01년 93억불에서 '10년 412억불로 약 318억불 증가 (341% ↑)

참고 2 CEPA 발효(10. 1. 1) 후 교역변화

- [수출] CEPA 발효 후 수출 43% 증가, 114억불 달성
 - '09년 80억불 수출에서 '10년 34억불 증가한 114억불 기록
 - '09년 80억불에서 발효 후 114억불로 대폭 (42.7%)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체수출은 3,635억불에서 4,664억불로 28.3% 증가율을 나타냄
 - 전체 수출에 비해 對인도 수출신장률이 14.4%p 상회, CEP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전체 수출 내에서의 對인도 수출비중은 CEPA 발효 전 2.2%에서 발효 후 2.5%로 0.3%p 증가
- [수입] CEPA 발효 전 대비 37% 증가, 57억불 기록
 - '09년 41억불 수준에서 '10년 57억불로 큰 폭 (37%) 증가
 - '09년 41억불에서 CEPA 발효 후 57억불로 대폭 (37%)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은 3,231억불에서 4,252억불로 31.6% 증가
 - 전체 수입에 비해 對인도 수입신장률이 5.4%p 상회
 - 전체 수입 내에서의 비중은 CEPA 발효 전 · 후 1.3% 수준 유지

한-인도 CEPA 발효 전 · 후 교역 비교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무역증가율 (%)	對인도 (A)	42.7	37.0	48.8
	전체(對세계) (B)	28.3	31.6	1.8
	차이 (A-B)	14.4	5.4	47.0
전체수출 내 차지비중 (%)	CEPA 발효 후(C)	2.5	1.3	14.0
	CEPA 발효 전(D)	2.2	1.3	9.6
	차이 (C-D)	0.3	0.0	4.4

- [성질별 교역] 자본재 수출급증(49% ↑)으로 무역수지 급상승(51% ↑)
 - 소비재 : 수출액(6.3% ↑), 수입액 (5.2% ↑), 무역수지(21.4% ↑)
 - 원자재 : 수출액(40.3% ↑), 수입액 (41.8% ↑), 무역수지(9.9% ↑)
 - 자본재 : 수출액(48.6% ↑), 수입액 (9.1% ↑), 무역수지(50.8% ↑)

양국간 성질별 수출입 구조 (대분류 기준)

	CEPA 발효 前				CEPA 발효 後			
	수출	수입	교역	수지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지
소비재	381	353	734	28	405	371	776	34
					(6.3)	(5.2)	(5.7)	(20.0)
원자재	3,750	3,580	7,330	171	5,263	5,075	10,338	188
					(40.3)	(41.8)	(41.0)	(9.9)
자본재	3,882	209	4,091	3,672	5,767	228	5,995	5,538
					(48.6)	(9.1)	(46.5)	(50.8)

참고 3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HS 4단위)

- [수출] 자동차 부속품 · 전화기 · 선박 · 철강 · 석유제품 등 강세
 - 최대 수출품목은 자동차부속품으로서 전체 수출의 약 12% 차지
 - 10대 상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속품(11.5%), 전화기(6.2%), 선박(6.1%), 철강제품(5.1%), 석유제품(5.1%) 등
 - CEPA 발효 전 대비 수출증가폭이 큰 품목은 증기발생보일러(357% ↑), 폴리카르복시산(156% ↑), 선박(147% ↑) 등으로 나타남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순위	CEPA 발효 前 (2009)			CEPA 발효 後 (2010)			
	세번	품목명	수출액* (비중)**	세번	품목명	수출액 (비중%)	증감액*** (비율%)
1	8708	자동차 부속품	1,020 (12.7)	8708	자동차 부속품	1,310 (11.5)	290 (28.4)
2	8517	전화기	684 (8.5)	8517	전화기	706 (6.2)	22 (3.2)
3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446 (5.6)	8901	선박	693 (6.1)	412 (146.6)
4	2710	석유와 역청유	444 (5.5)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586 (5.1)	140 (31.4)
5	8901	선박	281 (3.5)	2710	석유제품	583 (5.1)	139 (31.3)
6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247 (3.1)	2917	폴리카르복시산 등	394 (3.4)	240 (155.8)
7	7308	철강제의 구조물	212 (2.6)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06 (2.7)	59 (23.9)
8	8479	기계류	186 (2.3)	8402	증기발생 보일러	294 (2.6)	229 (357.1)
9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161 (2.0)	4002	합성고무	281 (2.5)	146 (109.7)
10	2917	폴리카르복시산 등	154 (1.9)	8479	기계류	240 (2.1)	54 (29.0)
	소계		3,835 (47.9)	소계		5,393 (47.2)	

* 금액단위 : 백만 \$
 ** () : 전체 수입 대비 비중%
 *** 증감액 : 발효 전(2009) 대비 수입 증가액 또는 감소액

- [수입] 수입은 광물 등 원자재와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아
 - 최대수입품목은 석유제품으로서 전체 수입의 과반수인 54%를 차지
 - 10대 상위 수입품목은 면사(5.8%), 페로얼로이(4.2%), 알루미늄의 괴(3.3%), 아연의 괴(1.8%) 등 임
 - CEPA 발효 전 대비 수입증가폭이 큰 품목은 알루미늄의 괴(414% ↑), 연의 괴(406% ↑), 아연의 괴(264% ↑), 페로얼로이(155% ↑) 등으로 나타남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순위	CEPA 발효 前 (2009)			CEPA 발효 後 (2010)			
	세번	품목명	수출액* (비중%)**	세번	품목명	수출액 (비중%)	증감액*** (비율%)
1	2710	석유와 역청유	2,282 (72.5)	2710	석유제품	3,063 (54.0)	781 (34.2)
2	5205	면사	197 (6.3)	5205	면사	327 (5.8)	130 (66.0)
3	7112	귀금속	189 (6.0)	7202	페로알로이	237 (4.2)	144 (154.8)
4	2306	오일 케이크	94 (3.0)	7601	알루미늄의 과	190 (3.3)	153 (413.5)
5	7202	페로알로이	93 (3.0)	7901	아연의 과	102 (1.8)	74 (264.3)
6	2304	대두유 추출물	90 (2.9)	7112	귀금속	86 (1.5)	△103 (-54.4)
7	2601	철광과 그 정광	84 (2.7)	2306	오일 케이크	85 (1.5)	△9 (-9.6)
8	3204	합성유기착색제	43 (1.4)	2601	철광과 그 정광	80 (1.4)	△4 (-4.8)
9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39 (1.2)	7201	선철과 스피그라 이즌	73 (1.3)	73
10	2901	비환식탄화수소	38 (1.2)	7801	연의 과	66 (1.2)	53 (406.2)
	소계		3,149 (76.0)	소계			4,309 (75.9)

* 금액단위 : 백만 \$

** () : 전체 수입 대비 비중(%)

*** 증감액 : 발효 전(2009) 대비 수입 증가액 또는 감소액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1.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	-	-	-	-	-	-
Austria	8.4	8.6	10.1	12.0	13.0	13.0	14.9
Belgium	9.8	9.8	11.9	11.9	14.0	14.0	14.3
Canada	1.4	3.0	3.2	3.3	4.4	4.4	5.0
Czech Republic	-	-	-	-	-	-	15.5
Denmark	1.1	1.2	0.2	0.6	1.4	0.9	1.1
Finland	2.1	2.8	7.5	8.3	8.7	11.2	14.1
France	11.6	12.4	14.4	17.1	18.5	18.5	18.5
Germany	8.5	9.6	11.7	12.5	13.2	13.0	14.5
Greece	5.6	6.0	5.7	7.1	9.1	7.9	9.4
Hungary	-	-	-	-	-	-	14.7
Iceland	2.1	2.3	0.8	0.6	0.7	1.0	2.5
Ireland	1.6	2.3	4.0	4.4	5.1	4.9	4.7
Italy	8.7	9.7	11.6	11.3	11.7	12.4	12.6
Japan	4.0	4.4	6.0	7.4	8.3	7.7	9.0
Korea	-	-	0.1	0.2	0.2	0.9	1.3
Luxembourg	8.9	6.7	9.6	10.2	10.3	9.6	9.8
Mexico	-	-	-	2.1	1.7	2.1	2.5
Netherlands	10.1	12.5	15.6	16.3	18.8	16.0	17.4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Norway	3.5	5.5	9.7	9.0	8.9	10.8	9.6
Poland	-	-	-	-	-	-	11.0
Portugal	3.5	4.4	6.8	6.8	6.5	7.5	9.7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4.2	6.0	8.8	11.0	11.2	11.5	11.6
Sweden	4.0	5.7	8.0	13.4	11.8	14.2	13.1
Switzerland	2.6	3.1	5.2	5.8	5.8	6.0	7.5
Turkey	0.6	0.6	1.1	1.9	1.6	2.9	2.0
United Kingdom	4.7	5.1	6.1	5.8	6.6	6.0	6.1
United States	3.3	4.3	5.2	5.8	6.4	6.9	6.9
EU 19 ¹⁾	6.2	6.8	8.8	9.9	10.7	10.7	11.8
EU15 ¹⁾	6.2	6.8	8.8	9.9	10.7	10.7	11.4
OECD Europe ¹⁾	5.4	6.0	7.8	8.7	9.3	9.6	10.7
OECD Total ¹⁾	4.6	5.2	6.5	7.1	7.6	7.8	8.9
OECD America ¹⁾	2.4	3.7	4.2	3.7	4.2	4.4	4.8
OECD Pacific ¹⁾	1.3	1.5	1.5	1.9	2.1	2.2	2.6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	-	-	-	-	-	-	-
14.8	14.8	14.6	14.7	14.6	14.5	14.4	14.2	14.3
13.9	14.2	14.4	14.3	14.0	13.7	13.5	13.6	14.0
4.9	5.1	5.2	5.3	5.1	5.0	5.0	4.8	4.7
15.6	15.7	16.0	16.3	16.0	16.1	16.2	16.2	16.0
1.8	1.7	1.2	1.2	1.2	1.1	1.0	1.0	1.0
11.9	12.0	11.9	11.8	11.7	12.0	12.1	11.9	12.0
16.0	16.0	16.1	16.3	16.1	16.2	16.3	16.1	16.0
14.5	14.4	14.3	14.4	14.2	13.9	13.7	13.2	13.3
10.4	10.6	11.6	11.8	11.1	11.1	11.0	11.7	11.0
11.2	11.3	11.5	11.5	11.3	11.7	11.9	12.9	13.0
2.9	2.8	2.9	3.1	3.1	3.2	3.3	3.1	2.9
4.2	4.3	4.2	4.3	4.5	4.6	4.6	4.7	5.0
12.1	12.0	12.2	12.4	12.4	12.6	12.5	13.0	13.4
9.5	9.9	10.0	9.9	9.9	10.1	10.2	10.3	-
3.8	4.2	4.4	4.7	4.8	5.0	5.2	5.5	5.8
10.1	10.9	10.9	10.8	10.7	10.5	9.9	10.2	10.8
2.8	2.9	3.0	2.9	2.8	2.8	2.7	2.8	2.7
15.4	13.8	13.3	13.4	13.8	13.1	14.1	13.6	-
0.0	0.0	0.0	0.0	0.0	0.0	0.0	0.0	0.0
8.9	9.2	9.9	9.8	9.4	8.9	8.7	9.1	8.9
12.9	13.4	12.9	12.8	12.3	12.3	12.2	12.0	-
10.3	10.5	10.8	11.1	11.1	11.4	11.4	11.7	11.9
14.1	14.3	14.6	13.8	13.1	12.6	11.7	11.7	11.9
11.9	12.1	12.0	12.1	12.1	12.0	12.1	12.1	12.1
13.6	14.2	13.9	13.6	13.3	13.2	12.5	12.6	11.7
7.3	7.6	7.6	7.5	7.0	7.0	6.8	6.7	6.8
4.5	5.6	4.9	5.4	5.7	5.4	5.5	5.1	5.7
6.2	6.2	5.9	6.3	6.6	6.7	6.8	6.6	6.9
6.9	7.0	6.9	6.8	6.8	6.7	6.7	6.6	6.6
11.6	11.7	11.7	11.7	11.6	11.5	11.5	11.5	-
11.1	11.2	11.1	11.2	11.2	11.1	11.1	11.1	-
10.6	10.8	10.8	10.8	10.7	10.6	10.5	10.6	-
9.1	9.2	9.2	9.3	9.2	9.1	9.1	9.1	-
4.9	5.0	5.0	5.0	4.9	4.8	4.8	4.7	4.6
3.3	3.5	3.6	3.6	3.7	3.8	3.9	4.0	-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2.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	-	-	-	-	-	-
Austria	24.9	25.4	27.6	30.9	31.8	32.9	35.9
Belgium	31.4	28.8	30.2	28.9	31.6	33.2	32.9
Canada	5.6	9.7	10.0	10.5	13.5	12.1	14.0
Czech Republic	-	-	-	-	-	-	41.3
Denmark	3.8	3.2	0.6	1.3	3.0	2.0	2.2
Finland	6.8	8.9	20.4	23.3	21.9	25.6	30.8
France	34.2	36.3	40.6	42.7	43.3	44.1	43.0
Germany	26.8	30.3	34.0	34.3	36.5	37.5	39.0
Greece	31.6	30.0	29.5	32.9	35.6	30.2	32.4
Hungary	-	-	-	-	-	-	35.6
Iceland	8.1	8.3	2.7	2.2	2.4	3.1	8.1
Ireland	6.5	8.2	13.8	14.3	14.8	14.8	14.4
Italy	34.2	37.8	45.9	38.0	34.7	32.9	31.5
Japan	21.8	22.3	29.0	29.1	30.3	26.4	33.5
Korea	-	-	0.9	1.1	1.5	5.1	7.0
Luxembourg	32.3	28.7	29.4	28.8	26.2	27.0	26.5
Mexico	-	-	-	14.1	11.3	13.4	16.6
Netherlands	30.8	35.1	38.4	38.1	44.3	37.4	41.9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Norway	11.9	16.1	24.8	21.1	20.8	26.3	23.5
Poland	-	-	-	-	-	-	30.4
Portugal	21.8	23.9	34.6	29.5	25.9	27.2	30.2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28.3	37.4	47.5	48.6	40.8	35.4	36.2
Sweden	12.1	14.9	19.5	28.8	25.0	27.2	27.6
Switzerland	14.9	16.0	22.0	23.4	22.7	23.4	27.0
Turkey	5.9	6.3	9.5	14.0	14.3	19.7	12.1
United Kingdom	15.4	13.9	17.5	16.7	17.8	17.0	17.8
United States	13.3	16.1	20.5	21.9	25.2	25.1	24.8
EU 19 ¹⁾	22.7	24.2	28.6	29.1	28.9	28.3	30.5
EU15 ¹⁾	22.7	24.2	28.6	29.1	28.9	28.3	29.5
OECD Europe ¹⁾	20.1	21.6	25.7	26.2	26.0	26.2	28.2
OECD Total ¹⁾	17.6	19.1	22.0	22.1	22.1	22.3	24.7
OECD America ¹⁾	9.4	12.9	15.3	15.5	16.6	16.9	18.5
OECD Pacific ¹⁾	7.3	7.4	7.5	7.6	7.9	7.9	10.1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	-	-	-	-	-	-	-
34.1	32.8	33.3	33.5	33.7	34.3	34.4	33.7	33.5
31.0	31.5	32.0	32.1	31.2	30.6	30.5	31.0	31.5
13.6	14.6	15.3	15.6	15.1	14.9	14.8	14.4	14.5
44.2	43.9	44.2	43.6	42.3	42.9	43.7	43.5	43.8
3.6	3.6	2.5	2.5	2.4	2.2	2.1	2.0	2.0
25.2	26.9	26.6	26.7	26.8	27.3	27.9	27.7	28.0
36.0	36.3	37.0	37.7	37.1	36.9	37.0	37.0	37.2
39.0	39.8	40.3	40.5	40.7	39.9	38.4	36.6	36.4
30.7	32.2	34.5	36.6	35.7	35.3	35.2	36.4	35.1
29.3	29.7	30.3	30.5	30.1	31.3	32.1	32.7	32.5
7.7	8.0	8.1	8.4	8.0	7.9	7.9	7.7	8.1
13.5	14.9	15.1	14.9	15.0	15.1	14.6	15.4	17.7
28.6	28.6	29.4	29.6	30.3	30.8	29.6	30.0	31.1
35.2	36.4	38.2	38.5	37.7	36.8	36.6	36.4	-
16.7	18.2	18.8	19.5	20.7	21.0	21.0	20.8	21.9
25.7	27.5	27.7	28.2	28.7	27.8	27.7	27.8	28.1
16.5	17.0	17.9	16.9	16.5	15.7	14.9	15.3	13.1
38.9	36.0	35.5	36.3	36.9	33.9	36.1	36.2	-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9	21.5	22.9	23.1	21.7	20.4	19.8	20.8	21.1
39.5	41.1	39.1	39.3	39.0	37.3	35.8	34.3	-
30.3	31.1	31.2	31.9	32.8	32.7	32.1	32.1	32.7
41.5	43.1	44.0	41.7	41.4	40.2	39.9	39.8	40.7
34.8	35.7	35.2	35.3	34.9	33.7	32.9	32.6	36.8
26.4	28.5	29.0	28.1	27.4	26.7	25.5	26.1	24.8
24.3	25.6	25.6	25.5	24.4	23.9	23.3	23.3	23.1
18.7	21.5	19.8	20.8	23.9	22.4	22.4	21.7	24.0
17.0	17.1	17.0	18.3	18.9	18.9	18.5	18.4	19.2
23.2	24.2	26.1	26.4	26.0	24.3	23.6	23.4	24.5
30.0	30.5	30.7	30.9	30.8	30.4	30.2	30.2	-
27.7	28.2	28.4	28.8	28.8	28.4	28.2	28.2	-
27.9	28.6	28.7	28.9	28.8	28.4	28.1	28.1	-
24.9	25.6	25.9	26.1	26.0	25.5	25.3	25.2	-
17.8	18.6	19.8	19.6	19.2	18.3	17.8	17.7	17.4
13.0	13.7	14.3	14.5	14.6	14.5	14.4	14.3	-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3.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	-	-	-	-	-	-
Austria	3.7	3.8	4.2	5.0	5.4	5.5	6.3
Belgium	2.8	3.0	3.5	3.4	4.5	4.3	4.4
Canada	0.5	1.3	1.2	1.2	1.5	1.6	1.8
Czech Republic	-	-	-	-	-	-	3.7
Denmark	1.0	1.0	0.1	0.4	0.8	0.9	1.1
Finland	0.0	0.2	1.5	1.2	1.5	1.3	2.6
France	2.2	2.4	3.0	4.5	5.0	5.6	5.8
Germany	3.7	4.3	5.1	5.6	5.7	5.6	6.4
Greece	2.3	2.6	2.4	3.1	4.0	4.0	3.8
Hungary	-	-	-	-	-	-	2.3
Iceland	0.0	0.0	0.0	0.0	0.0	0.1	0.1
Ireland	0.8	1.1	1.6	1.5	1.8	1.7	1.6
Italy	-	-	2.3	2.1	2.3	2.4	2.7
Japan	1.3	1.7	2.2	2.6	3.0	3.1	3.7
Korea	-	-	0.0	0.0	0.0	0.3	0.4
Luxembourg	3.3	2.7	3.7	4.0	3.8	3.7	3.9
Mexico	-	-	-	-	-	-	-
Netherlands	5.0	5.5	6.7	6.8	8.4	9.9	11.1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Norway	0.0	0.0	1.9	2.1	2.4	3.4	3.4
Poland	-	-	-	-	-	-	-
Portugal	1.4	1.7	2.6	2.6	2.6	2.7	3.1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1.0	1.2	1.7	2.4	2.0	1.9	1.9
Sweden	0.6	0.7	0.0	0.0	0.1	0.1	1.6
Switzerland	1.1	1.3	2.3	2.6	2.6	2.8	3.5
Turkey	0.3	0.2	0.4	0.7	0.5	1.1	0.8
United Kingdom	2.1	2.3	2.4	2.2	3.1	2.3	2.5
United States	1.2	1.9	2.2	2.4	2.7	3.0	3.0
EU 19 ¹⁾	2.1	2.3	2.7	3.0	3.4	3.5	3.8
EU15 ¹⁾	2.1	2.3	2.7	3.0	3.4	3.5	3.9
OECD Europe ¹⁾	1.7	1.9	2.4	2.6	3.0	3.1	3.5
OECD Total ¹⁾	1.5	1.7	2.0	2.3	2.5	2.7	3.0
OECD America ¹⁾	0.9	1.6	1.7	1.8	2.1	2.3	2.4
OECD Pacific ¹⁾	0.4	0.6	0.6	0.6	0.7	0.8	1.0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	-	-	-	-	-	-	-
6.0	6.1	6.0	6.0	6.0	5.9	5.8	5.8	5.8
4.3	4.5	4.5	4.4	4.3	4.2	4.1	4.1	0.0
2.0	2.1	2.1	2.1	2.0	2.0	2.0	1.9	1.9
3.5	3.5	3.6	3.7	3.6	3.6	3.6	3.6	3.6
1.8	1.7	1.2	1.2	1.1	1.1	1.0	1.0	1.0
2.2	2.2	2.1	2.1	2.1	2.2	2.3	2.3	2.2
4.0	4.0	4.0	4.1	4.0	4.0	4.1	4.0	4.0
6.4	6.3	6.2	6.3	6.1	6.1	6.0	5.8	5.8
4.1	4.2	4.5	4.7	4.4	4.4	4.4	4.5	-
2.0	2.2	2.3	2.3	2.4	2.3	2.5	3.4	3.4
-	-	-	-	-	-	-	-	-
1.3	1.3	1.3	1.3	1.5	1.5	1.4	1.4	1.6
2.3	2.3	2.3	2.3	2.3	2.2	2.2	2.3	2.4
4.0	4.2	4.3	4.3	4.3	4.4	4.5	4.5	-
2.1	2.5	2.6	2.8	2.8	2.9	3.0	3.1	3.3
4.5	4.9	4.8	4.7	4.4	4.4	4.2	4.4	4.7
-	-	-	-	-	-	-	-	-
7.7	6.5	6.2	6.4	6.8	6.4	6.7	6.4	-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3.1	3.4	3.3	3.2	3.0	2.9	3.0	2.9
5.5	5.5	5.1	5.2	5.0	4.8	4.9	4.8	-
3.2	3.4	3.4	3.6	3.5	3.5	3.4	3.5	3.7
2.9	3.0	3.0	2.8	2.9	3.0	2.8	2.8	2.9
1.8	1.8	1.8	1.8	1.8	1.8	1.8	1.8	1.8
2.8	2.8	2.8	2.8	2.7	2.7	2.7	2.6	2.7
3.4	3.5	3.6	3.5	3.3	3.3	3.2	3.1	3.2
1.6	1.7	1.7	1.9	2.0	1.9	2.1	2.1	1.9
2.5	2.5	2.4	2.5	2.7	2.8	2.8	2.7	2.8
3.1	3.1	3.1	3.0	3.0	2.9	2.9	2.9	2.9
3.6	3.6	3.6	3.6	3.6	3.5	3.5	3.5	-
3.7	3.6	3.6	3.6	3.6	3.5	3.5	3.5	-
3.5	3.5	3.5	3.5	3.5	3.4	3.4	3.4	-
3.1	3.2	3.1	3.2	3.1	3.1	3.1	3.1	-
2.5	2.6	2.6	2.6	2.5	2.5	2.4	2.4	2.4
1.5	1.7	1.7	1.8	1.8	1.8	1.9	1.9	-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4.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	-	-	-	-	-	-
Austria	11.1	11.3	11.6	12.7	13.2	13.9	15.2
Belgium	8.9	8.9	8.7	8.3	10.2	10.1	10.2
Canada	2.1	4.1	3.7	3.7	4.7	4.4	5.2
Czech Republic	-	-	-	-	-	-	9.9
Denmark	3.2	2.7	0.4	0.9	1.7	2.0	2.2
Finland	0.0	0.6	4.2	3.3	3.7	2.9	5.8
France	6.6	6.9	8.6	11.1	11.8	13.2	13.4
Germany	11.8	13.6	14.9	15.3	15.8	16.2	17.1
Greece	13.0	13.0	12.4	14.5	15.8	15.1	13.3
Hungary	-	-	-	-	-	-	5.7
Iceland	0.0	0.0	0.0	0.0	0.2	0.3	0.3
Ireland	3.2	3.8	5.5	4.7	5.2	5.2	4.8
Italy	-	-	9.0	6.9	6.8	6.3	6.6
Japan	7.2	8.5	10.8	10.2	10.8	10.6	13.8
Korea	-	-	0.0	0.0	0.0	1.4	2.0
Luxembourg	11.9	11.5	11.3	11.3	9.7	10.4	10.6
Mexico	-	-	-	-	-	-	-
Netherlands	15.3	15.3	16.4	15.7	19.8	23.1	26.6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Norway	0.0	0.0	4.9	5.0	5.6	8.4	8.2
Poland	-	-	-	-	-	-	-
Portugal	8.5	9.0	13.3	11.3	10.1	9.9	9.7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6.5	7.5	9.1	10.8	7.2	5.8	5.8
Sweden	1.9	2.0	0.0	0.1	0.1	0.1	3.4
Switzerland	6.4	6.9	9.7	10.4	10.3	10.7	12.6
Turkey	2.6	2.4	3.2	5.1	4.7	7.4	4.7
United Kingdom	7.0	6.1	6.9	6.4	8.4	6.6	7.5
United States	5.1	6.9	8.8	9.2	10.5	11.0	10.8
EU 19 ¹⁾	7.8	8.0	8.8	8.9	9.3	9.4	9.9
EU15 ¹⁾	7.8	8.0	8.8	8.9	9.3	9.4	10.1
OECD Europe ¹⁾	6.6	6.7	7.9	8.1	8.4	8.8	9.2
OECD Total ¹⁾	5.8	6.1	6.9	7.1	7.5	7.8	8.3
OECD America ¹⁾	3.6	5.5	6.2	6.4	7.6	7.7	8.0
OECD Pacific ¹⁾	2.4	2.8	2.7	2.6	2.7	3.0	3.9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	-	-	-	-	-	-	-
14.0	13.5	13.7	13.8	13.7	13.9	13.9	13.7	13.6
9.7	10.0	9.9	9.9	9.6	9.4	9.2	9.4	0.0
5.5	5.9	6.2	6.3	6.1	6.0	5.9	5.8	5.8
10.0	9.9	10.0	9.9	9.5	9.7	9.8	9.7	9.8
3.6	3.5	2.4	2.4	2.3	2.1	2.0	2.0	2.0
4.7	4.9	4.7	4.8	4.8	5.0	5.4	5.2	5.1
8.9	9.0	9.3	9.4	9.3	9.2	9.3	9.3	9.2
17.2	17.5	17.6	17.7	17.6	17.4	16.9	16.1	15.9
12.0	12.7	13.4	14.6	14.0	14.0	13.9	14.1	-
5.4	5.7	6.1	6.1	6.3	6.3	6.8	8.6	8.5
-	-	-	-	-	-	-	-	-
4.2	4.4	4.6	4.7	5.0	4.8	4.4	4.6	5.6
5.4	5.5	5.6	5.5	5.5	5.5	5.3	5.3	5.5
14.7	15.5	16.3	16.5	16.2	15.9	16.0	15.9	-
9.3	10.7	11.1	11.7	12.1	12.1	11.9	11.6	12.2
11.4	12.2	12.3	12.4	11.9	11.6	11.7	12.0	12.4
-	-	-	-	-	-	-	-	-
19.4	17.1	16.6	17.4	18.3	16.5	17.3	17.0	-
0.0	0.0	0.0	0.0	0.0	0.0	0.0	0.0	0.0
7.2	7.3	7.8	7.8	7.3	6.9	6.6	6.9	7.0
16.8	17.0	15.5	15.9	15.7	14.7	14.4	13.7	-
9.3	10.0	9.9	10.3	10.2	10.0	9.7	9.6	10.1
8.5	9.0	8.9	8.5	9.1	9.6	9.4	9.4	9.9
5.2	5.3	5.2	5.3	5.2	5.0	5.0	4.9	5.5
5.4	5.7	5.9	5.8	5.6	5.5	5.4	5.5	5.7
11.2	11.8	12.0	12.0	11.4	11.2	10.8	10.9	10.8
6.7	6.4	6.8	7.3	8.4	7.7	8.4	8.8	8.0
6.8	6.8	6.8	7.4	7.9	7.9	7.8	7.5	7.9
10.4	10.8	11.7	11.7	11.4	10.6	10.4	10.3	10.8
9.4	9.5	9.4	9.6	9.6	9.4	9.3	9.3	-
9.1	9.2	9.2	9.4	9.4	9.2	9.2	9.1	-
9.2	9.3	9.3	9.5	9.5	9.3	9.2	9.3	-
8.7	8.9	8.9	9.1	9.1	8.9	8.8	8.9	-
7.9	8.4	8.9	9.0	8.8	8.3	8.1	8.0	8.3
6.0	6.5	6.8	7.1	7.1	7.0	7.0	6.9	-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5.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	-	-	-	-	-	-
Austria	3.9	4.0	5.0	6.0	6.5	6.4	7.3
Belgium	6.4	6.1	7.4	7.5	8.2	8.8	8.6
Canada	0.9	1.6	2.0	2.1	2.8	2.7	3.0
Czech Republic	-	-	-	-	-	-	10.1
Denmark	0.2	0.2	0.1	0.2	0.6	0.0	0.0
Finland	2.1	2.6	5.5	6.7	6.6	9.1	9.9
France	8.6	9.1	10.4	11.4	12.0	11.4	11.3
Germany	4.6	5.1	6.3	6.7	6.8	6.6	7.2
Greece	2.2	2.3	2.4	3.1	3.8	3.9	4.3
Hungary	-	-	-	-	-	-	11.9
Iceland	2.1	2.3	0.8	0.6	0.6	0.9	2.4
Ireland	0.8	1.3	2.4	2.9	3.3	3.0	2.9
Italy	-	-	9.3	8.4	8.3	8.9	8.3
Japan	1.7	2.3	3.2	3.8	4.2	3.7	4.3
Korea	-	-	0.1	0.2	0.2	0.7	0.9
Luxembourg	5.1	3.6	5.3	5.6	5.1	4.7	4.5
Mexico	-	-	-	-	-	-	-
Netherlands	4.1	5.9	7.2	7.6	7.5	3.2	2.8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Norway	3.0	4.8	7.2	6.5	6.1	6.8	5.6
Poland	-	-	-	-	-	-	-
Portugal	2.1	2.7	4.1	4.1	3.8	4.5	6.1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3.2	4.8	7.1	8.5	8.4	8.3	8.0
Sweden	3.0	4.4	7.6	12.8	11.3	13.6	11.2
Switzerland	1.2	1.4	2.3	2.6	2.6	2.7	3.4
Turkey	0.3	0.4	0.7	1.1	1.0	1.6	1.1
United Kingdom	2.3	2.6	3.8	3.5	3.4	3.5	3.3
United States	1.9	2.3	2.8	3.1	3.5	3.5	3.5
EU 19 ¹⁾	3.5	3.9	5.6	6.3	6.4	6.4	6.9
EU15 ¹⁾	3.5	3.9	5.6	6.3	6.4	6.4	6.4
OECD Europe ¹⁾	3.1	3.5	5.0	5.6	5.6	5.7	6.2
OECD Total ¹⁾	2.6	3.0	4.1	4.6	4.7	4.7	5.3
OECD America ¹⁾	1.4	2.0	2.4	2.6	3.2	3.1	3.3
OECD Pacific ¹⁾	0.6	0.8	0.8	1.0	1.1	1.1	1.3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	-	-	-	-	-	-	-
7.1	7.0	6.9	6.9	6.8	6.8	6.7	6.7	6.8
8.4	8.5	8.7	8.7	8.5	8.3	8.2	8.3	0.0
2.8	2.9	2.9	3.0	2.9	2.8	2.8	2.7	2.7
10.1	10.1	10.3	10.4	10.2	10.3	10.2	10.2	1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8.8	8.9	8.9	8.9	8.8	9.0	8.9	8.7	9.0
11	10.9	11.0	11.1	10.9	10.9	11.0	10.9	10.9
7.1	7.1	7.0	7.1	6.9	6.7	6.5	6.3	6.3
4.9	4.9	5.5	5.4	5.1	5.0	5.0	5.4	-
9.0	9.0	9.1	9.1	8.8	9.2	9.2	9.3	9.4
-	-	-	-	-	-	-	-	-
2.7	2.8	2.7	2.7	2.7	2.8	2.9	3.0	3.2
8.4	8.4	8.4	8.7	8.7	8.8	8.7	8.9	9.1
4.4	4.6	4.6	4.5	4.5	4.6	4.6	4.7	-
1.7	1.7	1.8	1.9	2.0	2.1	2.3	2.4	2.6
4.4	4.8	4.8	4.7	4.7	4.6	4.3	4.3	4.6
-	-	-	-	-	-	-	-	-
4.5	4.4	4.4	4.3	4.2	4.1	4.6	4.5	-
0.0	0.0	0.0	0.0	0.0	0.0	0.0	0.0	0.0
5.3	5.6	5.9	5.9	5.7	5.4	5.3	5.5	5.4
5.7	5.7	5.4	5.2	4.9	4.9	4.8	4.8	-
6.7	6.7	6.9	6.9	7.1	7.3	7.4	7.6	8.0
9.1	8.9	8.9	8.4	7.6	7.0	6.3	6.3	6.7
8.7	8.9	8.8	8.9	8.8	8.8	8.9	8.9	8.8
10.6	11.2	11.1	10.5	10.5	10.4	9.7	9.8	8.8
3.4	3.5	3.5	3.4	3.2	3.2	3.1	3.1	3.1
2.2	3.1	2.2	2.5	2.6	2.5	2.4	2.4	2.8
3.5	3.5	3.3	3.5	3.6	3.7	3.7	3.7	3.8
3.5	3.5	3.5	3.5	3.5	3.4	3.4	3.3	3.3
6.9	6.9	7.0	6.9	6.8	6.8	6.7	6.7	-
6.4	6.5	6.6	6.5	6.5	6.5	6.4	6.5	-
6.4	6.5	6.5	6.5	6.4	6.4	6.3	6.3	-
5.5	5.6	5.6	5.6	5.5	5.5	5.4	5.4	-
3.1	3.2	3.2	3.2	3.2	3.1	3.1	3.0	3.0
1.5	1.6	1.6	1.6	1.6	1.7	1.7	1.8	-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6.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Australia	-	-	-	-	-	-	-
Austria	11.6	11.7	13.6	15.3	15.9	16.2	17.7
Belgium	20.5	17.9	18.8	18.2	18.6	20.9	19.8
Canada	3.5	5.3	6.1	6.6	8.6	7.6	8.5
Czech Republic	-	-	-	-	-	-	27.0
Denmark	0.6	0.5	0.2	0.4	1.2	0.0	0.0
Finland	6.8	8.4	15.0	18.7	16.6	20.8	21.6
France	25.3	26.6	29.3	28.4	28.0	27.2	26.4
Germany	14.4	16.1	18.3	18.4	18.9	19.1	19.3
Greece	12.2	11.7	12.3	14.4	14.9	15.1	14.8
Hungary	-	-	-	-	-	-	28.7
Iceland	8.1	8.3	2.7	2.2	2.3	2.9	7.8
Ireland	3.3	4.5	8.2	9.4	9.4	9.0	8.9
Italy	-	-	36.8	28.4	24.8	23.6	20.7
Japan	9.5	11.6	15.1	14.8	15.4	12.7	16.0
Korea	-	-	0.8	1.1	1.5	3.7	5.0
Luxembourg	18.6	15.3	16.2	15.8	12.9	13.2	12.2
Mexico	-	-	-	-	-	-	-
Netherlands	12.6	16.5	17.6	17.8	17.7	7.5	6.7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Norway	10.2	13.8	18.5	15.3	14.4	16.6	13.8
Poland	-	-	-	-	-	-	-
Portugal	13.2	14.7	20.8	17.7	14.9	16.3	19.1
Slovak Republic	-	-	-	-	-	-	-
Spain	21.7	30.0	38.4	37.8	30.6	25.5	25.0
Sweden	8.9	11.7	18.3	27.6	23.8	26.0	23.7
Switzerland	6.6	7.0	9.8	10.6	10.3	10.5	12.3
Turkey	3.3	3.9	6.3	8.1	8.3	11.0	6.3
United Kingdom	7.6	7.1	10.9	10.1	9.2	9.9	9.7
United States	7.6	8.5	10.9	11.9	13.7	12.9	12.7
EU 19 ¹⁾	12.7	13.8	18.3	18.6	17.2	16.7	17.7
EU15 ¹⁾	12.7	13.8	18.3	18.6	17.2	16.7	16.4
OECD Europe ¹⁾	11.4	12.5	16.4	16.6	15.4	15.3	16.3
OECD Total ¹⁾	9.8	10.9	13.8	14.0	13.3	13.1	14.2
OECD America ¹⁾	5.6	6.9	8.5	9.3	11.2	10.2	10.6
OECD Pacific ¹⁾	3.2	3.9	4.0	4.0	4.2	4.1	5.3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	-	-	-	-	-	-	-
16.4	15.5	15.7	15.8	15.7	16.1	16.1	15.8	15.8
18.7	18.9	19.3	19.4	18.9	18.5	18.6	18.9	0.0
7.8	8.2	8.6	8.8	8.5	8.5	8.5	8.2	8.3
28.5	28.4	28.3	28.0	27.0	27.4	27.5	27.3	27.7
0.0	0.0	0.0	0.1	0.1	0.1	0.1	0.0	0.0
18.5	20.1	20.0	20.1	20.3	20.4	20.4	20.3	20.9
24.8	24.9	25.3	25.6	25.2	24.9	25.0	25.1	25.3
19.2	19.5	19.8	19.9	19.8	19.2	18.4	17.4	17.2
14.3	14.9	16.3	16.9	16.4	16.0	16.1	16.9	-
23.6	23.6	23.9	24.1	23.4	24.6	24.9	23.6	23.4
-	-	-	-	-	-	-	-	-
8.6	9.8	9.7	9.4	9.1	9.4	9.3	9.9	11.3
19.9	20.0	20.4	20.7	21.1	21.4	20.5	20.5	21.2
16.4	16.9	17.6	17.5	17.1	16.8	16.6	16.5	-
7.5	7.5	7.7	7.9	8.6	8.9	9.1	9.1	9.6
11.2	12.0	12.2	12.4	12.6	12.1	12.0	11.9	12.1
-	-	-	-	-	-	-	-	-
11.3	11.6	11.7	11.6	11.2	10.7	11.8	12.1	-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5	13.0	13.8	13.9	13.1	12.4	12.1	12.7	12.9
17.3	17.6	16.2	15.9	15.6	14.9	14.3	13.8	-
19.6	19.9	20.1	19.9	21.0	21.1	20.9	20.9	21.9
26.8	26.7	26.7	25.4	24.1	22.3	21.4	21.5	22.7
25.4	26.2	25.9	26.0	25.5	24.7	24.2	24.0	26.7
20.4	22.4	23.1	21.8	21.5	21.0	19.8	20.3	18.8
11.2	11.8	11.8	11.6	11.0	10.8	10.6	10.7	10.6
9.0	12.0	9.1	9.5	10.7	10.2	9.6	10.1	11.8
9.6	9.7	9.6	10.2	10.4	10.3	10.1	10.2	10.8
11.6	12.1	13.1	13.4	13.3	12.4	12.0	11.8	12.4
17.6	18.0	18.1	18.1	17.8	17.6	17.4	17.4	-
15.9	16.3	16.6	16.6	16.6	16.4	16.2	16.3	-
16.7	17.2	17.2	17.2	17.0	16.8	16.5	16.5	-
14.6	15.1	15.2	15.2	15.0	14.8	14.6	14.6	-
9.7	10.2	10.8	11.1	10.9	10.4	10.2	10.0	10.3
6.0	6.1	6.3	6.3	6.4	6.4	6.4	6.4	-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법인세 5%P 감세로 GDP 0.4~1.2% 증가”

정부가 2008년 추진한 최고 5%포인트 규모의 법인세 감세는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와 중앙대 류덕현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는 적자재정 보완조치의 유형이나 실행시기와 상관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8~2012년에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는 2013년 이후 7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2~3% 촉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의 적자 감세 이후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와 증세(소비세, 소득세) 등 여러 재정건전성 제고 방식과 시행시기별 정책 조합을 가정해 동태적 다세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법인세 감세는 재정건전성 보완 조치로서 사회보장금과 보조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축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높이는 방식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밖에 법인세 감세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보고서는 법인세 5%포인트 감세에 따라 지니계수의 변화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1921% 증가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나 감세 규모와 견주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자본 소유의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초기 혜택을 집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일률 적용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정책지원의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감세에 따른 단기적인 소득재분배적 관점과 정치적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세율인하 적용과 같이 과표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과표구간 재조정과 투자세액공제 방식 등의 보완적 조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8년 세계개편에서 법인세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13%, 25%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10%, 20%로 낮추기로 했으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 → 20%) 시기를 2년 유보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신문 2011-2-15일자〉

**“지하경제 규모 GDP 17~18% 수준”
조세연구, “현금영수증 확대 노력 필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이며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안종석 선임연구원 총괄 집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형추계방식을 사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7.1%에 달했다.

모형추계방식으로 추정하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으로 마약거래나 모조품 제도 등 불법적 경제활동은 배제된다.

보고서는 이 방식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1990년에는 GDP의 28.7%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됐다.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화폐가 오가는 거래의 규모를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1970년대는 GDP의 62% 수준에 달했지만 1980년대에 37%로 줄고 1990년 24%, 2000년대 18% 등으로 빠르게 축소됐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분석하면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으로 GDP의 2.3~3.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으며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정의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정책에서도 금융시장 활성화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 제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독려를 통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1-02-11일자〉

**정부부채에 공공기관 145개.민간기금 20개 추가
연금 총당부채.공기업 부채.내부거래 등은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하되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국가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을 부채로 포함해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82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1개는 모두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어서 제외됐다.

민간관리기금 중에서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0개는 관리 주체는 민간이지만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정부로 분류됐다.

따라서 현행 정부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부

관리기금으로 한정되지만 개편안은 민간관리기금 20개와 비영리공공기관 145개도 정부의 포괄범위에 추가해 일반 정부 부채 규모는 증가한다.

개편안은 또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꿈에 따라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했고 재정수지에 감가상각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IMF의 2001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은 직역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3개국(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만 포함하고 대다수 국가는 제외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두 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에는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개편안은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국제기준에 따라 모두 제외하되 연금의 국채 보유규모는 기존 재정통계에 포함됐던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내부거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분으로 100조원 수준이다.

개편안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은 일반 정부의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우발성 채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실상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됐던 보증채무는 국제기준에 따라 포함하지 않았고 통안증권 등 한국은행의 부채도 한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

〈연합뉴스 2011-01-26일자〉

한국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고령화 이대로 가면

국가 채무비율(GDP 대비) 34%(2010년) → 115%(205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지난해 34.2%로 일본의 198%나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60%대에 비해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는 약 1150조원이고, 국가채무 규모는 394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 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나랏빛의 급증이 재정위기를 부를 수 있고,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부담률(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20.8% 수준(2013년 추정치)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 채무비율이 115.6%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 수준(2050년 평균 116~125%)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이유는 노령화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난해 11% 정도였지만 2050년에는 38.2%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에는 22.32%로 12.91%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빚을 내서 연금과 복지제도를 지탱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으로 늘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 115.6%로 급증할 국가 채무 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낮추려면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2050년까지 4.61%포인트 올려야 한다. EU가 권고하는 국가 채무비율 가이드라인인

60%에 맞추려면 조세부담률을 3.04%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소비세 세율(5%)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몰린 일본과 비슷한 증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은 한 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증세를 할 것인지, 현행 복지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1-29일자)

[무상복지의 함정]

“임금-투자 줄어 결국 경제활력 떨어져”

〈인터뷰〉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무상복지는 결국 세금 부담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복지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무상복지는 재원이 확대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면서 “세부담을 늘리면 결국 이는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장은 “무상복지를 현실화하려면 결국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이윤 감소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세 부담 증가가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조

세연구원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9.5%에서 2050년 21.6%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980년대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격을 높여주고 근로 의욕과 사업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세율 문제는 세수 측면과 함께 경제활동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문제까지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장은 “무조건 복유럽의 모델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원장은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면 더 필요한 사람이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보다는 복지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11-1-17일자)

재정포럼

2011년 2월호 통권 제17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2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2호(통권 제17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